

세법연구 15 - 07

# 부채와 자본에 대한 과세체계 연구

2015. 12

세 법 연 구 센 터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연 구 진

연구책임자

홍 성 훈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오 유 나 공인회계사

조 승 수 공인회계사

# 목 차

I. 서론.....	7
II. 우리나라의 부채와 자본에 대한 과세체계.....	10
1. 개요.....	10
2. 부채 · 자본의 구분 기준.....	13
가. 회계기준.....	13
나. 세법.....	21
3. 부채 · 자본의 과세사례.....	23
가. 신종자본증권.....	23
나. 상환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	29
다. 이익참가부사채.....	31
라. 후순위사채.....	33
마. 요약.....	33
III. 주요국의 부채와 자본에 대한 과세체계.....	36
1. OECD.....	36
가. 개관.....	36
나. 혼성 불일치에 대한 각국의 대응 동향.....	39
2. 미국.....	40
가. 개관.....	40
나. 부채 · 자본의 구분.....	42
3. 호주.....	52
가. 개관.....	52

나. 부채 · 자본의 구분.....	54
4. 일본.....	66
가. 개관.....	66
나. 부채 · 자본의 구분.....	67
5. 독일.....	73
가. 개관.....	73
나. 부채 · 자본의 구분.....	75
6. 싱가포르.....	79
가. 개관.....	79
나. 부채 · 자본의 구분.....	81
7. 국제비교.....	86
가. 세법적용의 원칙.....	86
나. 부채 · 자본의 구분.....	87
 IV. 시사점.....	91
1. 개별 기준 마련 검토.....	91
2. 개별 기준 이 외의 대안 검토.....	93
가. 실질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처리의 준용.....	93
나. 구분기준의 보완적 규정.....	95
 참고문헌.....	98

## 표목차

〈표 II-1〉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26
〈표 II-2〉 한국의 부채 · 자본 과세사례별 요약.....	35
〈표 III-1〉 재무적 이익 산출 방법.....	56
〈표 III-2〉 특수관계자 간 요구불 대출에 관한 사례.....	61
〈표 III-3〉 상환우선주에 관한 사례.....	62
〈표 III-4〉 전환우선주에 관한 사례.....	63
〈표 III-5〉 전환사채에 관한 사례.....	65
〈표 III-6〉 출자 비율별 배당금 수익 공제율.....	67
〈표 III-7〉 일본의 비용 인정 한도.....	70
〈표 III-8〉 일본의 금융상품별 세법상 분류 요약.....	73
〈표 III-9〉 싱가포르의 발행자 · 투자자별 과세체계.....	80
〈표 III-10〉 자본으로 분류된 혼성금융상품.....	84
〈표 III-11〉 부채로 분류된 혼성금융상품 .....	85
〈표 III-12〉 주요국의 세법상 부채 · 자본 구분 요약.....	90

## 그림목차

[그림 II-1]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분류.....	20
[그림 II-2] 신종자본증권 투자자 회계처리.....	28
[그림 III-1] 호주의 부채 구분 Flow chart.....	56
[그림 III-2] 비주주 자본 계정(Non-share capital account) .....	59

## I. 서 론

- 기업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수단으로서, 지분증권이나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자본구조에 영향을 줌
  - 기업은 전반적인 규제나 기업경영 및 금융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본조달 수 단을 결정함
  - 지분증권이나 채무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의 규제를 따르고, 거래 당사자들의 관계를 규율하는 상법의 절차를 준수하면서, 자본구조에 따른 기업가치도 고려해야 함
- 기업이 발행하는 금융상품의 형식에 따라, 지분증권의 대가로 지급하는 배당과 채무증권의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세법상 처분이 상이함
  - 재원을 조달하는 기업은 투자자의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배당을 지불하고 채권자의 채무증권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함
  - 대체로 채무증권의 이자에 대해서는 손금(비용)이나 익금(이익)으로 과세소득에 포함하나, 지분증권의 배당에 대해서는 손금이나 익금으로 포함하지 아니함
    - 발행자는 이자에 대하여 손금산입이 되고, 배당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이 되지 않는 반면, 투자자는 이자에 대하여 익금산입이 되고, 배당에 대해서는 일부 금액에 한하여(배당세액공제, 배당소득면제 등) 익금에 산입됨
    - 또한, 이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손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반면, 배당의 경우 주주의 입장에서는 배당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과세소득을 이연하여 인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거래 당사자별로 선호하는 바가 다를 수 있음
- 최근 국제적으로 전통적인 금융상품인 주식과 채권에 대한 이분법적인 구분의 경계에서 다양한 혼성금융상품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음

- 이는 채권-주식 혼성금융상품(debt-equity hybrid instrument)으로 통칭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신종자본증권, 상환우선주, 후순위채권 등이 존재함
  
-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세무상 차분이 달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경우 납세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음
- 다양한 혼성금융상품 중에서 더 많은 상품을 채권으로 간주하면 기업의 세부담 감소가 가능하며, 혼성금융상품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전략으로 세원이 잠식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
- 뿐만 아니라, 국가별로 혼성금융상품에 대해 판단 기준이 다르고, 한 국가에서도 세법, 상법, 회계기준상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될 수 있음
  
- 금융상품의 발행 형식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에 형식은 상이하고 실질이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세부담이 달라지는 문제도 일어날 수 있음
  
- 국제적으로 저세율국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이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원천지국에서의 세부담을 줄이는 과소 자본화(thin capitalization) 전략을 의도적으로 구조화하는 조세회피위험도 존재함
- 각 국가 간에 혼성금융상품을 규정하는 방법이나, 세무처리가 다양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비과세 효과를 양국에서 누리거나 저세율의 국가에 소득을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함
- 이로써 다국적기업이 한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비하여 세무상 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투자 ·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상품을 부채(채무증권) 또는 자본(지분증권)으로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 일관된 기준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증권발행에 관한 법인세제의 측면에서 주요국의 입법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시사점을 탐구함

## I. 서 론 9

- 본 보고서는 서론을 포함하여 총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부채와 자본에 대한 과세체계 구분 기준과 과세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정리함
  - 제Ⅲ장에서는 OECD, 미국, 호주, 일본, 독일, 싱가포르의 부채·자본에 대한 과세 체계 및 구분 기준을 조사하고, 우리나라와 주요국을 비교·분석함
  - 제Ⅳ장에서는 본 연구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함

## II. 우리나라의 부채와 자본에 대한 과세체계

### 1. 개요

- 세법규정은 기업활동의 재원조달비용에 반영되는 효과를 통해 기업의 재무의사결정에 영향<sup>1)</sup>을 미치며 이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
  - Modigliani and Miller의 자본구조 수정이론(1963)에 따르면, 기업의 법인세를 고려 시 부채를 사용할수록 기업가치가 증대된다고 주장함<sup>2)</sup>
    - 타인자본 사용에 대한 이자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반면 자기자본 사용에 대한 배당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채 사용이 유리하다고 주장함
  - Miller(1977)은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함께 고려할 경우 부채의 조세효과는 기업 가치에 무차별하다고 주장함<sup>3)</sup>
    - 부채로 자금조달을 함으로써 위험이 증가된 주주의 세전 자본비용과 이자비용을 손금산입해서 얻는 세금효과가 정확하게 서로 상쇄된다고 보았음
  - Graham(1996)은 기업이 부채를 많이 사용할수록 이자비용의 손금산입이 증가하고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계세율이 낮아진다고 주장함<sup>4)</sup>
    - 부채의 세금효과가 평균적인 기업가치의 대략 7~10%를 설명할 수 있다고 추정 하며, 논문의 추후 검토(2003)에서 한계 투자자의 실체와 세무 특성을 거의 파악하지 못하며 이를 추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밝힘

---

1) 최용선 외(2013), p. 3

2) 선정규(2013), p. 50 재인용

3) 최용선 외(2013), p. 483 재인용

4) 최용선 외(2013), p. 484

- 기업의 자본조달 의사결정에 조세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관된 결론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 조세가 기업의 자본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함
  - 현실에서는 보다 복잡한 조세규정들로 인해 기업의 자본조달에 미치는 영향을 명백하게 밝히기 어려울 수 있음
  - 독일과 몇몇 국가의 경우에는 조세가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세법에서 기업이 조달하는 최대한의 부채 · 자본비율<sup>5)</sup>을 설정하여 지나치게 자본이 과소화되지 않도록 개입함<sup>6)</sup>
- 기업의 자본조달에 대한 세무처리나 부채, 자본의 구분은 과세 관할권에 따라 달라지나, 최근에는 금융상품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혼성금융상품이 다양하게 발행됨
  - 자본(Equity)과 부채(Debt)의 성격을 모두 가진 신종자본증권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위하여 고안된 것임
  - 본래 은행이 부채성 자금에 대하여 자기자본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발행되었던 것이 신종자본증권임
    - 은행의 업무 특성상 자기자본비율이 낮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자기자본비율 달성을 및 유지를 위해서는 부채성 자금에 대하여도 자기자본성을 일정 부분 인정될 것이 요구됨
  - 구미(歐美)를 중심으로 일반회사도 신종자본증권을 조달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높아졌으며<sup>7)</sup>, 우리나라도 2012년 4월 상법개정을 통해 일반기업도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됨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신종자본증권은 바젤 III 시행 이전부터 은행의 자본확충 목적으로 발행되었으나, 최근에는 금융업뿐만 아니라 비금융업에서도 발행이 증가함

---

5) 부채 · 자본비율은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함

6) 최용선 외(2013), p. 484

7) 이승환(2009), p. 40

-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신종자본증권은 두산인프라코어의 2012년 5,200억 원 규모의 발행<sup>8)</sup>을 시작으로 포스코, 대한항공, 현대중공업, 신세계건설 등이 잇따르고 있음<sup>9)</sup>
  -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나, 높은 조기상환 가능성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신용평가사들은 차입금으로 인식하고 있음<sup>10)</sup>
- 부채와 자본의 특성을 모두 가진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구분 기준이 모호함에 따라 납세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OECD는 혼성금융상품을 통한 각국의 규정의 차이를 이용하여 세원감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발표함
  -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혼성금융상품이 발행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모호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였음
  - 상환청구권이 내재된 우선주 거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2010년 법적인 형식을 존중하여 세법상 자본으로 분류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국세청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세법상 부채로 분류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려 기존의 기획재정부 입장과 다른 해석을 내린 바 있음<sup>11)</sup>

8) 파이낸셜 뉴스 2014. 5. 13. 기사(<http://www.fnnews.com/news/201405131727185355?t=y>, 검색일자: 2016. 2. 11.)

9) 비금융업의 신종자본증권 발행현황은 다음과 같음

발행자	발행일	발행 금액	표면 이자율(%)
신세계건설	2015년 6월	500억원	5.3
만도	2015년 3월	2,000억원	4.9
현대중공업	2014년 12월	4,300억원	4.8~4.9
롯데쇼핑	2013년 11월	2,700억원	4.7
포스코에너지	2013년 8월	5,000억원	4.7~5.2
대한항공	2013년 6월	2,100억원	6.4
포스코	2013년 6월	1조원	4.3~4.6
SK텔레콤	2013년 6월	4,000억원	4.21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2016. 2. 11. 접속)

10) 매일일보, 2015. 12. 27. 기사(<http://m.m-i.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27>, 검색일자: 2016. 2. 11.)

11) 최규환(2015), p. 150

- 이하에서는 재무회계기준 및 세법에 따른 금융상품의 부채 · 자본의 구분 기준을 살펴보고 각 금융상품별 사례를 파악하고자 함
  - 세법과 재무회계는 각각 상이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별 기준을 마련함
    - 세법은 국가의 재정조달, 부의 재분배, 경제활동의 촉진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재무회계는 법인의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2. 부채 · 자본의 구분 기준

### 가) 회계기준

#### 1)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 일반기업회계기준은 2011년부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선택하지 않은 일반기업(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됨
  -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수정 · 보완한 편람식 회계기준인 '일반기업회계기준'을 2009년 11월 27일자로 제정하고 「외부감사및회계 등에관한규정」 제68조에 의거하여 붙임자료를 첨부하여 발표하였음

#### 가) 부채

- 부채는 기업실체가 현재 시점에서 부담하는 경제적 의무임<sup>12)</sup>
  - 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로 규정함
    - 의무란 일정한 방법으로 실행하거나 수행할 책무 또는 책임을 말하는 것임

---

12) 『재무회계개념체계』(2003), p. 26

- 의무는 계약이나 법령에 의해 법적 강제력이 있는 의무와 상관습이나 관행 또는 거래상대방과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등으로 인해 발생함
- 일반적으로 기업실체가 자산을 이미 인수하였거나 자산을 취득하겠다는 취소불능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재의 의무가 발생함
- 부채의 금액이 반드시 확정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부터 발생함
  - 신용으로 재화를 구입하였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매입채무가 발생하며 은행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상환의무가 발생함
  - 미래에 발생이 예상되는 대규모 수선비의 경우와 같이 장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기대된다 하더라도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부터 기인하지 않은 의무는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함
  
-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제표에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up>13)</sup>
  -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sup>14)</sup>하고,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임<sup>15)</sup>

#### 나) 자본

- 자본은 기업실체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액 또는 순자산으로서 기업 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잔여청구권임<sup>16)</sup>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은 자본의 정의를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며, 주주로부터의 납입자본에 기업활동을 통하여 획득하고 기업의 활동을 위해 유보된 금액을 가산하고, 기업활동으로부터의 손실 및 소유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한 주주지분 감소액을 차감한 잔액이다”라고 명시함

13)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 금융부채 문단 6.4

14)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 금융부채 문단 6.12

15)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 금융부채 문단 6.13

16) 재무회계개념체계(2003), pp. 26~27

- 대차대조표에 표시되는 자본의 총액은 회계기준에 의해 자산 및 부채를 인식, 측정 함에 따라 결정됨
- 따라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의 총액은 주식의 시가총액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 반적임

## 2) 한국채택 국제기업회계기준(K-IFRS)

-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에 합치시키라는 IMF(국제통화기금)와 IBRD(국제부동개발은행)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업회계기준을 전면개정하고, 2009년부터 K-IFRS를 도입함<sup>17)</sup>
  - 2009년은 선택적 적용을 허용하고, 2011년부터는 모든 상장기업에 의무 적용시키고 있음
  - 현재 100여 개국이 도입 또는 허용하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착되는 추세임
- 금융상품의 발행실체는 발행하는 금융상품을 기준서 제1032호에 정한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지분상품(자본)의 정의를 충족하는지에 따라 분류함
  - 기준서 제1032호는 국제회계기준 IAS 32 financial Instrument: Presentation에 대응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임

### 가) 금융부채의 정의<sup>18)</sup>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를 부담함
  -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를 부담함

---

17) 한국회계기준원(<http://www.kasb.or.kr/>, 검색일자: 2016. 2. 4.)

18) 한국회계기준원(2015.8), p. 8

-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에 해당함
  -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파생상품임
  -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파생상품임

나) 지분상품(자본)의 정의<sup>19)</sup>

-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으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자본으로 분류함
  - 즉, 금융상품의 발행실체 입장에서 금융상품은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면 자본으로 분류됨
-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나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 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가 없어야 함
-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이어야 함
  - 변동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없는 비파생상품
  -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하여서만 결제될 파생상품

다) 금융부채와 자본의 구분<sup>20)</sup>

- 발행실체는 금융상품 계약의 실질에 따라 부채에 해당하는지, 자본에 해당하는지 판단함
  - 금융상품의 분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의 내용, 조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 것임

---

19) 한국회계기준원(2015. 8), pp. 8~9

20) 한국회계기준원(2015. 8), pp. 9~19

- 이때 계약이란,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당사자 간 경제적 결과를 자의적으로 회피할 여지가 적은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말함
- 계약의 형태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서류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예를 들면, 배당금 지급조건이 액면 5%이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2%의 배당금을 가산한다는 계약을 체결함
  - 이러한 계약은 배당금 지급의 경제적 강제가 있을 뿐 배당금 지급의무는 정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적 강제 그 자체는 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아니므로 계약의 실질에서 볼 때, 고려하지 아니함
- 금융부채와 자본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이므로, 이를 검토함
  - 계약에 의하지 않은 부채는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더라도 그 의무가 계약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금융부채가 아님
  -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어야 함
    - 금융자산이 아닌 것을 인도할 의무는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예를 들어, 계약에서 발행 기업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지 못할 경우 비금융상품을 인도하도록 조건을 두어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피할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금융부채임
  - 의무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다면 존재함
    - 발행실체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능력에 제약이 있더라도 이러한 제약은 의무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예를 들어, 외화의 지급이 곤란하거나 현금 등을 지급하는 데 감독기구의 지급승인이 필요한 경우라도 발행실체의 계약상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계약상 권리가 있는지

### 검토함

- 발행실체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 계약에서, 자기지분상품(자본)으로 결제할 의무가 없으면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의무를 무조건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이는 자본으로 분류함
- 다만, 이러한 발행실체의 선택을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을 발행실체의 선택이나 의사결정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IFRS 해석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유보한 상태임
  - 주주총회를 기업의 조직으로 보아 판단할 것인지, 기업과 독립적인 제3자로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인지를 검토해야 할 것임
  
- 비파생계약에서 인도할 주식의 수량이 확정되었는지 검토함
  - 비파생상품(예: 차입금)을 결제하기 위해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를 자본으로 분류함
    - 예를 들어, 액면가 100억원의 사채에 대해 현금 상환 대신 100만주의 자기지분상품을 발행하기로 계약했다면 발행할 주식 수가 확정되었으므로 자본으로 분류함
  - 비파생상품(예: 차입금)을 결제하기 위해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할 수 있다면, 이를 금융부채로 분류함
    - 예를 들어, 액면가 100억원의 사채에 대해 만기 시점에 100억원에 상당하는 자기지분상품을 발행하기로 계약한 경우는 금융부채로 분류함
  
- 파생계약에서 확정된 금액을 대가로 확정된 주식 수량을 인도하는지 검토함
  -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하기로 하는 파생계약에서는 인도할 주식 수량이 확정되어야 하고, 주식을 인도한 대가로 받을 현금 등 금융자산의 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만 자본으로 분류함
  
- 파생계약에서 결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어떠한 경우에 자본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함
  - 파생상품 계약에서 발행실체나 보유자가 계약하는 결제방법을 발행실체나 보유자

가 여러 가지로 선택할 수 있는 파생상품은 금융부채임

- 예를 들어, 기업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의 권리행사 시 보유자가 신주를 수령하거나 행사시점의 공정가치와 행사가액의 차이를 현금결제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차액을 결제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금융부채로 분류함

□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가 있는지 검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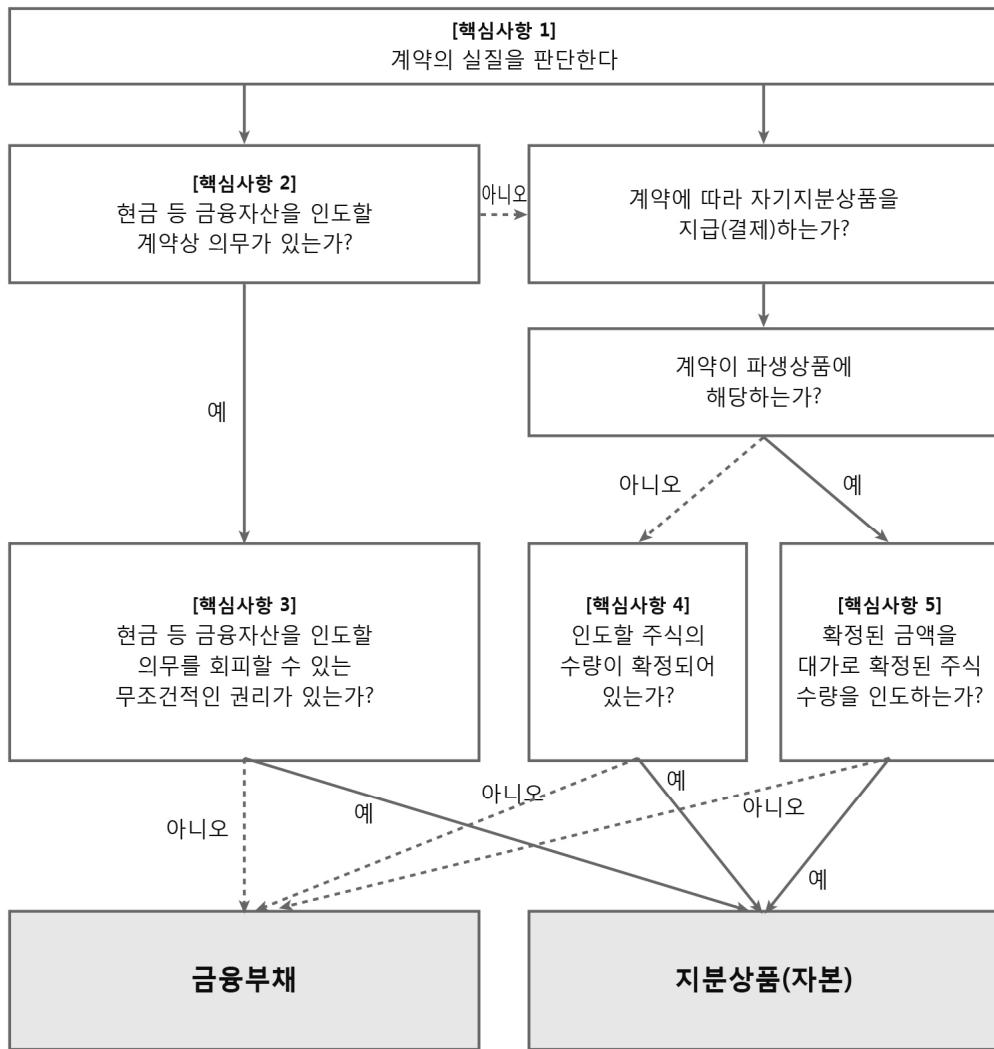
- 금융자산을 지급하여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가 포함된 계약은 금융부채임
- 현금으로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는 상환 금액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부채로 인식함
- 예를 들어 기업이 우선주와 함께 일정 당기순이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일정 금액으로 해당 우선주의 매입을 투자자가 청구할 수 있는 풋옵션을 발행하게 되면 이는 금융부채로 인식함

3)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 국제기업회계기준 비교

□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부채 · 자본의 구분에 있어 회계처리상 차이가 있음

-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법적 형식을 우선하여 부채를 인식하는 반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경제적 실질을 우선하여 부채를 인식함
- 상환우선주를 예로 살펴보면, 일반 기업회계기준은 법적 형식을 우선하여 자본으로 기재하고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경제적 실질을 우선하여 부채로 인식함

[그림 II-1]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분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2015), p. 7 도표

## 나. 세법

- 세법상의 법률요건을 용이하게 확정하기 위해서 대개 민사법상의 법률요건 또는 법률효과를 세법상의 법률요건으로 삼게 됨<sup>21)</sup>
  - 세법이 본래 요건사실로 삼고자 하는 것은 담세력이 있다는 사실이나, 이는 추상적이고 애매하므로 민법상의 법률요건이나 법률효과로 표시되는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과 형식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법은 부채와 자본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부채와 자본을 구분함에 있어 조세판결은 법적 형식에 따라 판단하고 있음
  - 기업회계기준 등을 보충적 법원으로 삼은 것으로 세법문제에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도옳은 경우 법관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음<sup>22)</sup>
  - 대법원은 사채는 채권의 형태로 거래계에 유통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사채발행 행위의 사법상의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sup>23)</sup>
    - 사채발행인의 특수관계자에게 사채대금을 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자금 사용인인 특수관계인을 실질적인 채무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은 사채발행행위의 사법상의 효과를 무시하고 특수관계인을 사채의 실질적 채무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함
    - 사채발행에 있어 일정한 절차적 요건이 요구됨에 따라 사채발행회사는 금전채무의 채무자 이상의 일정한 회사법상 지위를 차지하게 되며, 사채는 채권의 형태로 거래계에 유통될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임
  -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으로 미루어보아, 상법의 사채발행 규정에 따라 발행된 경우에는 법적 형식을 따를 것으로 사료됨

---

21) 이창희(2015), p. 84

22) 이창희(2015), p. 81

23) 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8462, 판결

-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는 것에 대한 해석문제가 존재할 수 있으나, 세법은 법률행위를 요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를 우선으로 삼아 판단할 수 있음<sup>24)</sup>
- 다만, 금융상품에 대한 구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대신 세법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 사전답변제도는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 또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본인의 ‘특정한 거래’의 과세 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사전(법정신고기한 이전)에 질의하면 ‘당사자’에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는 제도임<sup>25)</sup>
  - ‘특정한 거래’라고 함은 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는 거래를 말하는데,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개발단계에서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금융상품을 포함하고 있음
  - 납세자가 사전답변의 내용을 정당하게 신뢰하고 답변의 전제 사실대로 특정한 거래 등을 이행한 경우 과세관청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경정 등을 할 때에 사전답변을 받은 납세자의 신뢰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함

---

24) 「국세기본법」 제20조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5) [http://www.nts.go.kr/info/info\\_14\\_02\\_01.asp](http://www.nts.go.kr/info/info_14_02_01.asp), 검색일자: 2016. 2. 17.

### 3. 부채·자본의 과세사례

#### 가. 신종자본증권

##### 1) 개요

- 신종자본증권은 상법상 채권으로 구분되나 회계상 채권상품과 지분상품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이며 만기가 매우 길거나 만기연장 옵션이 있어 영구채로도 불립<sup>26)</sup>
  - 주식임에도 의결권이 없거나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증권 혹은 만기가 없거나 이자 지불의 정지 등의 사채와 같은 증권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상환기간이 없거나, 그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등 만기가 매우 긴
    - 발행회사의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을 상회하거나 재무구조가 악화된 때에는 그 이자 혹은 배당의 지급이 정지됨
    - 청산 시 그 변제가 다른 채권자보다 후순위로 발행됨
  - 신종자본증권은 발행회사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조항이 부가되어 발행됨
  - 은행업감독규정 시행규칙 별표3-3 바젤 I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으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음<sup>27)</sup>
    - 비누적적 영구우선주 형태일 것
    - 보완자본보다 후순위 특약 조건일 것
    - 배당지급기준은 확정되어 있어야 하며, 배당의 시기와 배당규모의 결정권을 가질 것
    -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신종자본증권 보유자에 의한 상환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

26) 한국회계기준원(2015), p. 5

27) 바젤 III기준에 의하면, 신종자본증권에 금리상향조정(Step-up) 또는 다른 상환유인이 없어야 하는 요건이 추가되었음(은행업감독업 시행세칙 별표 3-3 6(나))

- 신종자본증권은 1988년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BIS)<sup>28)</sup>의 바젤위원회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규제를 채택하면서 출현하게 됨<sup>29)</sup>
  - 신종자본증권은 후순위채와 달리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기본자본(Tier I)으로 분류됨에 따라, 2002년 11월과 2003년 4월에 은행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허용함
  - 신종자본증권이 기본자본으로 분류됨에 따라, 금융기관은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함
  - 그러나, 2013년 12월 1일 바젤 III<sup>30)</sup>을 시행함에 따라 이전 조건으로 발행되는 신종자본증권이 더 이상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조건부자본을 충족하여 발행함<sup>31)</sup>
    - 조건부자본은 사전에 정의된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채권이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은행 혹은 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전환되는 증권을 말함
    -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은행자본건전성 관련 국제기준인 바젤III 도입에 따라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은 8% 이상, 보통주 자본비율 4.5% 이상, 기본자본비율은 6% 이상을 유지해야 함<sup>32)</sup>
    - 바젤 III에서는 신종자본증권에 이자율 상향(Step-up) 조건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신종자본증권을 자기자본으로 인정하지 아니함<sup>33)</sup>

28)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로 산정함

29) 이승환(2009), P. 42

30) 바젤 III에 따른 총자본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됨(은행업감독기준 시행세칙 별표3)

$$\begin{aligned} \text{신용운영리스크기준 총자본비율} &= \frac{\text{총자본}}{\text{위험가중자산} + \text{리스크평가조정}} \times 100 \\ &= \frac{\text{보통주자본} + \text{기타기본자본} + \text{보완자본}}{\text{신용위험가중자산} + \text{운영위험가중자산} + \text{리스크평가조정}} \times 100 \end{aligned}$$

31) 장정모(2014), p. 1

32) <http://www.cgs.or.kr/CGSDownload/eBook/REV/C201111007.pdf>, 2016. 02. 17. 접속

3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2. 1일부터 은행지주회사에 바젤 III 자본규제 등 시행』, 2013. 8. 1

- 2012년 4월에 개정된 「상법」 제469조<sup>34)</sup>에 따라,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됨
  - 우리나라는 「상법」 제469조가 전면 개정되기 이전, (구) 「상법」 제471조 제2항 8호에서 사채의 발행을 위한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을 정하고 있어 영구채 등의 발행이 불가능<sup>35)</sup>하였음
  - 2012년 4월에 CJ제일제당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이 연 5.77%의 금리로 2,0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두산인프라코어가 5억달러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음

## 2)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

-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회계처리는 한국채택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으로 표시되며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부채로 표시됨
  -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상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음

---

34) 상법 제469조(사채의 발행) [전문개정 2011. 4. 14.]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2.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3.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③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및 발행 방법 등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35) 이승환(2009), p. 54

〈표 II-1〉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구분	일반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적용대상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선택하지 않은 일반기업	모든 상장기업
해당 기준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 금융부채	기준서 제1032호
부채 · 자본의 구분 기준	법적 형식을 우선함	경제적 실질을 우선함
재무상태표 표시	부채	자본 혹은 부채

-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판단 시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법적 형식을 우선하므로 사채발행의 절차를 봤아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부채로 표시함
  -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거의 영구적이며 후순위의 형태 등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상법」상 사채의 형태로 발행됨
  
- 반면, 경제적 실질을 우선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몇 가지 사안을 검토하여 분류하게 됨
  -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판단은 계약의 실질,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지 여부 등을 따져 판단하게 됨<sup>36)</sup>
  - 신종자본증권에 대하여 회계기준원은 ‘발행자가 원금이나 이자에 대해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상환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발행자의 보통주를 교부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수량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보았음<sup>37)</sup>
    - 30년 revolving(발행자 선택), 금리상향조건(5년 후 기본금리 + 5%, 7년 후 조정금리 + 2%), 투자자 풋옵션과 발행자 콜옵션인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부채 · 자본 구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음<sup>38)</sup>

36)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분류에 관한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서 규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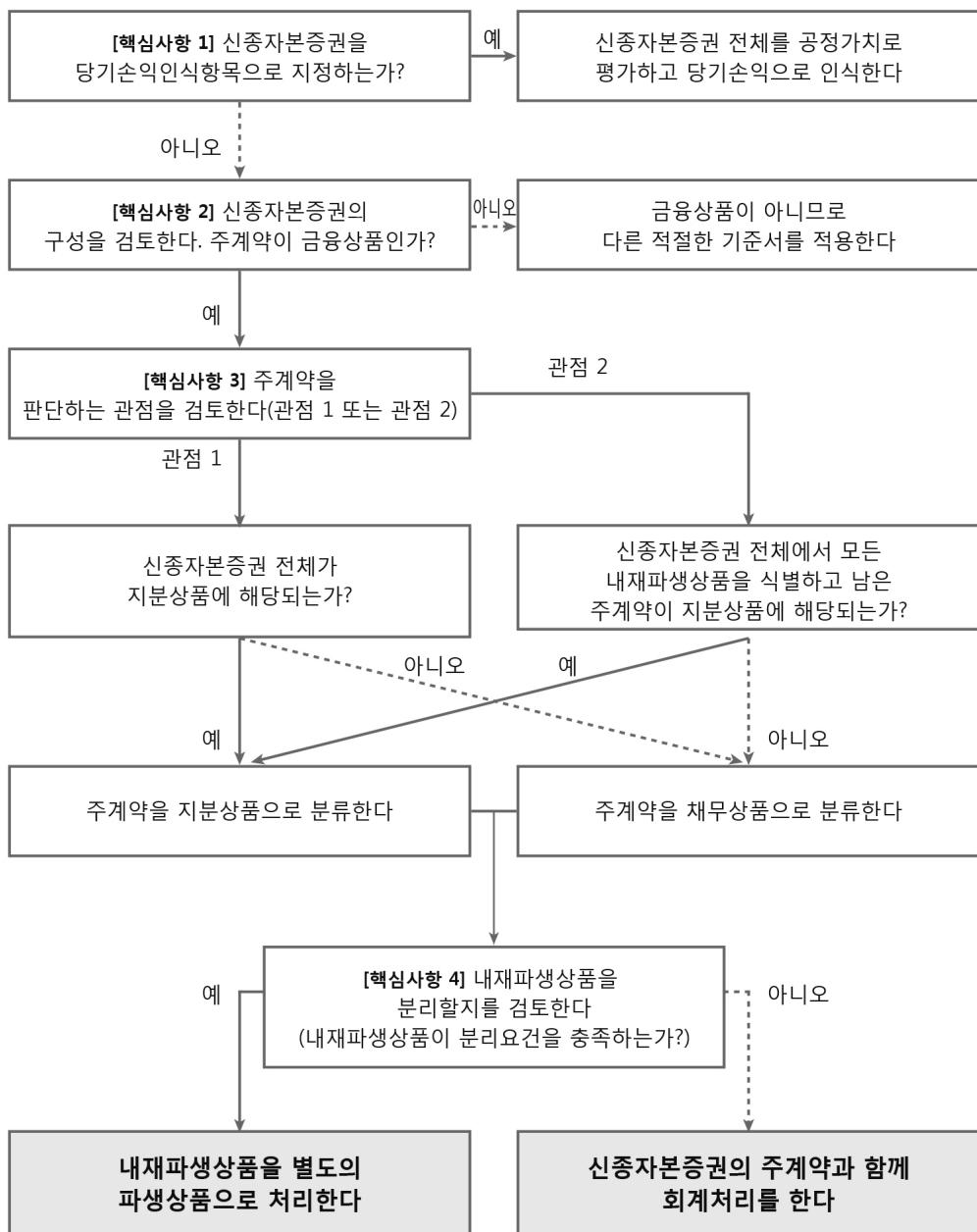
37) 회계기준원, 「신종자본증권’회계처리 심의결과 보도자료」, 2013. 9. 30

38) 두산인프라코어에서 발행한 영구채에 대한 심의결과임

- K-IFRS 질의회신, 금융위원회 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간담회 이후 세부 계약조건을 검토하고 IFRS 해석위원회에 공식 질의하는 등 추가 검토절차를 진행하여 결론을 내림
- 참고적으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서 자본으로 처리한 금리상향조건이 있는 신종자본증권에 대하여 신용평가 관점에서는 자본의 특성이 약해지는 것으로 봄
  - 신종자본증권의 만기가 긴 대신, 투자자에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가하는 금리상향조건은 매우 일반적인 조항임
    - 금리상향조건은 일정기간 경과 후 최초 발행 금리에 추가 금리를 가산함
  - 신용평가관점에서 신종자본증권의 금리상향조건은 실질적인 만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자본의 특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평가함<sup>39)</sup>
- 신종자본증권에 대하여, 사채의 형태로 발행되어 투자자에게 권리이자를 지급하는 부채로 보아 세무처리함
  - 법인세과-329(2014. 07. 24.), 원천세과-782(2011. 11. 30.) 등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채의 형태로 발행되는 신종자본증권을 부채로 보아 이자지급은 손금산입하고 지급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였음
  -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두20867, 2010. 03. 25.)에서도 자산건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후순위사채를 발행한 경우 손금불산입 대상의 전제가 되는 차입금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에 따라 부채로 보았음
  - 따라서 한국채택 기업회계기준에서 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권리이자 상당액을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함
- 즉, 세법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신종자본증권의 법적 형식을 우선하여 부채로 처리하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경제적 실질을 우선하여 자본으로 처리함
  - 세법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신종자본증권의 구분이 동일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자본으로 처리된 지급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함

39) 한국신용평가, 「Hybrid 평가방법론」, 2012. 12

[그림 II-2] 신종자본증권 투자자 회계처리



자료: 한국회계기준원(2015), p. 31 도표

## 나. 상환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

### 1) 개요

- 상환우선주 · 상환전환우선주<sup>40)</sup>는 주식의 일종으로서 상법상 자본으로 분류되나 만기 (상환기간)가 존재하는 등 부채의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 있어서 그 경제적 실질은 후 순위채와 유사하다는 특징이 있음<sup>41)</sup>
  - 상환우선주는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 약정된 가액으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으로, 상환권을 회사와 투자자 모두에게 부여할 수 있음
  - 상환전환우선주란 일반적으로 상환권과 전환권을 선택적 또는 동시에 가지고 있는 우선주임<sup>42)</sup>
    -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권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임
    - 투자자들은 상환전환우선주를 통하여 투자회사의 사업 성공 시에는 상장 등과 연동하여 보통주식으로의 전환권을 가지고, 사업 실패 시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 상환하여 투자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음<sup>43)</sup>
  - 상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는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 상환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부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2)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

- 상환우선주에 대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자본으로 처리하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그 실질에 따라 부채로 처리함
  -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법적인 형식을 우선하여 자본으로 처리함

40) 「상법」 제344조 제1항에서는 회사가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41) 금융감독원, 「상환우선주 등 주식에 대한 권리내용의 공시 강화」, 2005. 11. 1.

42) 임정하(2015), P. 146

43) 정수용 외(2012), p. 106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문단 15.3에서 주식에는 상환우선주를 포함한다고 명시함
-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서 금융상품은 법적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재무상태 표에 분류하여야 함
  - 확정되었거나, 미래의 시점에 확정되거나 결정 가능한 금액을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금융부채로 처리함<sup>44)</sup>
  - 또한, 보유자가 특정일이나 그 이후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금액으로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우선주는 금융부채로 처리함
-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자본으로 처리하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구성요소별로 부채, 자본으로 처리함
  - 상환전환우선주는 전환권과 상환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우선주로 금융감독원의 의견은 상환전환우선주의 구성요소별로 처리할 것을 권고함<sup>45)</sup>
    - 상환금액의 현재가치는 부채로 계상함
    - 조기상환청구권의 경우 투자자가 행사하는 권리는 그 가치를 부채에 가산하되, 발행자가 행사하는 권리는 부채에서 차감함
    - 전환권의 가치는 자본으로 분류함
- 세법은 상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하여 주식 발행에 대한 법적 형식을 우선하여 자본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그 실질에 따라 부채로 분류하기도 하여 그 구분이 모호함
  - 기획재정부는 국제회계기준에서 실질에 따라 부채로 처리하는 상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상장·비상장 기업의 형평성을 위해 기존과 동일하게 자본으로 처리한다고 입장을 밝힘
    - 2010년 세제개편안에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법인세 개정의 기본방향을 수립함
    - 동일한 경제행위에 대한 동일한 세부담 유지와 세무조정부담 최소화, 세법목적 상 합당한 회계처리는 수용하되 세부담 완화방안 마련을 원칙으로 삼았음

44) K-IFRS 제1032호 문단18 (1)

45)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K-IFRS 회계처리 주요 이슈 쟁점사항 및 금융감독원 의견」, 2011. 12

- 국세청은 금전대가 형식의 우선주에 대해서는 실질에 따라 부채로 본다는 입장의 유권해석을 회신한 바 있음
- 과세당국 및 기회재정부는 상환권이 부여된 우선주에 대하여 법형식을 우선하여 자본으로 분류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유권해석(법규법인2010-0015, 2010. 02. 11.)에서 상환우선주의 상환을 부채의 상환이 아닌, 자본의 환급으로 봄
  - 상환우선주의 상환은 자본거래에 해당되는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함
- 유권해석(서면4팀-1894, 2004. 11. 23)에서도 상환우선주를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함
  - 비상장주식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에는 배당우선주 및 상환우선주가 포함되는 것임
- 그러나, 실질적으로 금전사용의 대가로 판단되는 우선주거래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이 부채로 보아 판단한 사례가 있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짐
- 유권해석(법인세과-522, 2012. 08. 28.)에서 전환우선주를 취득하고 사전에 협약을 체결하여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풋옵션을 통해 행사차익(연 9%의 복리)을 더하여 환매도함에 따른 풋옵션의 행사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서는 5년 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고, 풋옵션을 부여한 전환우선주에 대하여 부채로 분류하였음

#### 다. 이익참가부사채

##### 1) 개요

- 이익참가부사채(利益參加附社債)는 일정한 이율의 이자가 지급되는 동시에 회사의 이익분배에도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1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sup>46)</sup>
- 2011년 개정을 통해 비상장법인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관련 규정은 「상법」 제469조 제2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음

## 2)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

-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모두 부채로 인식함
  - 일정기간에 이율과 배당률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사채에 대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사채발행의 법적 형식에 따라 부채로 인식하였음
  -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있으며, 이를 피할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으므로 금융부채로 인식함
- 세법에서도 사채발행의 법적 형식에 따라 부채로 분류하고, 이익참가에 따라 수령하는 소득의 구분은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것이라고 보임
  - 이익참가부사채의 이익참가와 관련한 유권해석(서면법규파-388, 2014. 04. 21.)에 따르면, 이익참가에 따른 배당은 배당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여 이는 손금에 산입되는 이자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됨
    - 질의법인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인으로 배당가능이익의 90%를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함
    - 질의법인은 사채이자 외 배당가능이익의 10%를 배당하기로 하였는바, 기존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및 이익참가부사채권자에 대한 이익배당을 합하여 배당가능이익 90% 이상의 배당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음

---

4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1

① 「상법」 제469조 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 2에 따른 사채나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 등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이익참가부사채의 이익참가와 이자지급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 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와 관련된 유권해석(서면법규과-39, 2013. 01. 15.) 을 보더라도 이는 손금의 대상으로 보는 것으로 이해됨

#### 라. 후순위사채

##### 1) 개요

- 후순위사채는 일반사채에 비해 청구권의 우선순위가 낮은 사채로서 위험이 큰 만큼 높은 이자율을 보장함
- 후순위사채도 대표적인 부채와 자본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채로 일반적인 사채에 비해서는 청구 순위가 낮으나 자본보다는 높음

##### 2)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

- 후순위사채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서 모두 부채로 처리되며, 세법에서도 부채로 처리됨
- 후순위사채는 법률상 사채발행의 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일정한 기간에 정해진 이율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따라서, 법률의 형식을 우선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세법에서는 부채로 판단하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서도 금융부채로 판단함

#### 마. 요약

- 세법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할 것을 전제하되 그 근거는 법률행위에 두고 있어 부채와 자본의 구분은 실질보다는 법률행위에 따름
-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적절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경제적 실질을 따져야 할 것이나, 세법은 실질을 구분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신종자본증권, 상환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 이익참가부사채, 후순위사채의 경제적 실질을 보면 법률행위와 달리 구분될 필요가 있음
  
-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 비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법률적 행위에 우선하여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세법과 구분의 결과가 동일함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기준을 상장사에 의무 적용하되, 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기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기업회계기준과 유사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국제회계기준에 비하여 경제적 실질을 고려할 만한 별도의 지침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법적인 형식에 우선하여 판단함
  
-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최대한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무정보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 경제적 실질을 우선하고 있으나, 강제되지 않은 경제적 의사까지 판단하고 있지는 아니함
- 예를 들어 신종자본증권의 이자율 상향조건(Step-up)과 같은 경제적 강제에 대하여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이를 인정하되 계약에 정한 상환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부채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고 설명<sup>47)</sup>하고 있어 완전한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만 판단하고 있지는 아니함
  - 금리상향조건은 경우에 따라 발행자가 조기에 상환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매우 불리하게 될 수 있는 경제적 강제가 될 수 있음
- 또한 후순위사채의 경우에도 높은 이율을 적용하고 일반사채에 비하여 청구권이 후순위임에 따라 자본적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금융부채로 판단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세법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법적인 형식을 우선하여 구분하는 반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일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최대한 실질에 따라 구분함

---

47) 한국회계기준원(2015), pp. 22~23

〈표 II-2〉 한국의 부채·자본 과세사례별 요약

구분	신종자본증권	상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이익참가부사채	후순위사채
일반기업회계기준	부채	자본	부채	부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자본	부채	부채	부채
세법	부채	자본	부채	부채

### III. 주요국의 부채와 자본에 대한 과세체계

#### 1. OECD

##### 가. 개관

- OECD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전략에 따른 세원 잠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5년 10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보고서를 최종 발표함
  - 다국적기업이 국가마다 다른 세법이나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조세회피 전략을 펼침에 따라 국제적 공동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됨
  - 2012년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OECD에 작업을 의뢰하여 2013년 Action plan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뒤, 2015년 최종 보고서를 발표함
- BEPS 프로젝트의 Action plan별 조치사항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국내법 또는 조세조약 개정 등으로 이행될 예정이며, 조치사항별로 이행 강제력에 차이가 있음
  - 조치사항은 강한 이행의무가 부여된 최소기준, 강한 이행의무가 권고된 공통접근, 선택적 도입이 가능한 모범관행, 권고안, 지침으로 구성됨
- 이하에서는 최종 발행된 15개의 BEPS 보고서 중 Action plan 2 혼성 불일치 거래 효과의 해소(Neutralising the Effects of Hybrid Mismatch Arrangements)에서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 방안과 각국의 대응 동향을 정리함
- OECD는 자본과 부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혼성금융상품으로 인한 과세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BEPS Action plan 2를 통해 권고사항을 발표하였음
  - 혼성 불일치는 장기과세이연을 포함하여 이중의 비과세를 목적으로 실체나 상품에

대한 국가 간의 상이한 세무처리를 이용함

- 혼성 불일치를 유발하는 거래의 유형은 광범위하고 관련 국가의 실질적인 세원 잠식을 야기하며, 거래의 공정성 · 투명성 ·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됨<sup>48)</sup>
    - 혼성 불일치로 인해 세수 손실이 얼마나 발생하였는지는 명백하게 알기 어려우나 혼성 불일치 거래는 전체 세수를 잠식한다고 결론을 내림<sup>49)</sup>
  - 국제적으로 법인세의 일관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혼성 불일치의 세무효과를 상쇄하는 조세협약 모델의 개발과 내국법의 개정을 권고함
- 
- OECD는 혼성금융상품과 혼성 불일치 사이의 인과관계는 명백하나 혼성금융상품의 요소를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함
    - 실제로 다양한 종류의 금융상품이 존재하고 국가 간 세무처리는 상이하므로, 혼성 불일치가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포괄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여 혼성요소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함<sup>50)</sup>
  - OECD는 혼성 불일치 거래는 불일치가 발생하는 각 관할권의 법에서 지급금의 규정을 비교함으로써 결정하고 불일치 종류를 D/NI, DD, 간접 D/NI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국내법 개정의 권고사항을 제시함
    - D/NI(Deduction/No Inclusion)는 지급한 자의 관할권에서 비용으로 공제받고, 수령한 자의 관할권에서 동 소득이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임
    - DD(Double Deduction)는 이중으로 공제된 경우로, 동일 지급금에 대하여 지급한 자의 관할권에서도 공제되고 수령한 자의 관할권에서도 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임
    - 간접 D/NI(Indirect Deduction/No Inclusion)는 혼성 불일치 거래로 지급한 자의 관할권에서 공제가 가능한 지급금에 대하여, 수령한 자의 관할권에서 그 공제를 상계한 경우임

---

48) OECD(2015), p. 15

49) OECD(2015), p. 15

50) OECD(2015), p. 18

- 납세자가 실질적인 규제 규정이 없는 관할권 간의 혼성 불일치 거래에 개입하여, 불일치의 효과를 제3국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포함함
  
- D/NI의 경우 혼성 불일치 거래에 대한 대응으로, 지급한 자의 관할권에서 비용공제를 부인할 것을 제안함<sup>51)</sup>
  - 혼성금융상품에 의한 지급금과 혼성 실체에 의한 지급금 모두 D/NI가 발생할 수 있음
  - 지급한 자의 관할권에서 불일치에 따른 효과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령인의 관할권에서 경상소득으로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후속적인 규정을 제안함
  
- DD와 관련하여 수취인인 모법인의 관할권에서 이중 공제를 부인하여야 할 것을 우선 방안으로 제안함<sup>52)</sup>
  - D/NI을 초래하는 상황과 같이, 특정 상황에서 혼성실체의 지급금은 DD를 유발할 수 있음
  - 만약 모법인의 관할권이 우선적 대응방안을 채택하지 않았다면, 지급자의 관할권에서 공제를 부인해야 함
  
- 간접 D/NI는 수취인이 지급받은 금액에서 혼성 불일치 거래와 별개로 비용을 상계한 경우 해당 지급금에 대하여 지급자의 관할권에서 부인할 것을 제안함<sup>53)</sup>
  
- 부당한 조약의 혜택을 얻기 위해, 혼성금융상품과 혼성실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국내 법의 개정과 함께 국가 간 조세조약의 개정을 권고하였음<sup>54)</sup>
  - 국내법 개정과 관련된 권리사항과 조세조약의 조항 사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였음

---

51) OECD(2015), p. 17

52) OECD(2015), p. 17

53) OECD(2015), p. 17

54) OECD(2015), p. 135

- 이중 거주 실체와 관련된 조세조약 이슈를 검토하고 도관체를 다루는 새로운 조약의 조항에 대하여 권고함
- 결국 OECD는 혼성금융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혼성금융의 기술적 특성을 규정하기보다는, 세무처리의 불일치를 유발하는 지급금에 대한 일관된 세무처리로 대응할 것을 권고함
- BEPS Action plan 2는 쟁점 관할권에서 공제되는 비용으로 처리되는 경우 상대방의 관할권에서 경상소득으로 포함되도록 조정하는 대책을 마련함

#### 나. 혼성 불일치에 대한 각국의 대응 동향

- 일부 국가는 혼성금융에 대한 OECD의 권고사항에 따라 국내법을 개정하거나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음
  - 미국, 영국, 호주에서 도입 및 개정을 검토하고 있음
-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제조세 개혁 조치를 통해 혼성 요소를 이용한 국제거래를 제한할 것을 제안함<sup>55)</sup>
  - 과세관할 간 거주자 판정의 비일관성을 이용한 다국적기업의 ‘무국적 소득(stateless income)’의 발생을 막기 위함
- 영국 재무부에서 발표한 2015년 11월 재정지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혼성 불일치를 해결하고자 OECD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예정임<sup>56)</sup>
  - 다국적기업이 금융거래, 사업구조를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새로운 규정은 혼성 불일치를 통한 국가 간 사업구조나 금융거래를 통해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법안은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됨

---

55)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5), p. 74

56) HMRC(2015), p. 123

- 호주 조세위원회는 2015년 11월 혼성 불일치 방지 규정에 대한 토론서를 공개하여 4가지 측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sup>57)</sup>
  - 혼성 불일치 방지규정의 도입에 있어 비용과 효익의 크기
    - 도입 시 발생 가능한 집행비용, 협력비용 등에 대한 고려
  - 현행 호주 세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 부채 · 자본 분류 등 현행 존재하는 세법과 혼성 불일치 방지규정 간의 충돌 가능성 고려
  - 다른 BEPS Action plan의 상호 간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 이자 제한 규정 등 다른 Action plan과의 중복성 및 불일치에 대한 고려
  - 기존 거래에 대한 혼성 불일치 방지규정 적용 여부와 최초 실행 시기
    - 적용 시기의 선택과 유예 허용 가능성 고려

## 2. 미국

### 가. 개관

- 미국은 194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폐쇄기업의 경우 자금조달을 위해 부채 사용의 비중이 높은 것을 인지하게 되었음<sup>58)</sup>
  - 폐쇄기업에서 부채 사용이 높은 이유는 공개기업의 주주의 지분 변동 시 투자자분의 회수 · 청산의 경우 과세되지 아니하나 그 외의 경우에는 자본이득세로 과세되기 때문임
  - 따라서, 폐쇄기업은 부채사용을 통한 이득을 얻으려는 유인이 큼
- 미국은 1960년 후반에도 기업합병에서 법인의 상당수가 합병을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 시 자본 대신 부채를 이용하는 것을 인지하게 됨

57) 한국조세재정연구원(<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InterTrends>, 검색일자: 2016. 2. 3.)

58) Donald R. Ames(1980), p. 1021

- 당시의 법원은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대출기관의 부채와 관련하여 채권자의 권리 행사 여부로 그 성격을 판단하였음<sup>59)</sup>
  - 즉, 법원은 지분투자자의 대출행위가 지분투자 가치를 위태롭게 할 경우 지분투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가지고, 집행하고자 하였는지 고려해야 함
- 법원은 기업의 부채자본비율도 고려하지 아니하여 높은 부채비율에도 불구하고 Baker Commodities<sup>60)</sup>는 자금조달에 이용된 금융에 대해 부채로 인정받음<sup>61)</sup>
  - Baker는 파트너십으로 설립된 신설 법인과의 자산교환거래를 체결하고, 지정된 기간에 무조건적 수익을 지급하는 약정을 포함함
  - 계약의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전체 잔금의 상환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함
  - 당시 Baker의 부채자산비율이 700 : 1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수익이 안정적이므로 자산교환거래에 따른 부채의 상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가능하다고 보아 자본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함
- 폐쇄기업의 부채 사용은 다음과 같은 이득이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위해 부적절하게 부채로 구분하는 행위에 대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이러한 부채 사용을 통한 자본조달은 기업에 이자 지급에 대한 비용공제와 같은 명백한 이득이 발생함<sup>62)</sup>
  - 주주의 요구수익률이 채권자의 요구수익률보다 더 높은 경우, 기업이 자본으로 자금조달 시 배당 지급을 위해 더 많은 수익을 얻어야 함
  - 이에 반하여 주주의 입장에서는 배당 혹은 이자 모두 경상소득에 포함되므로 금융상품의 분류 문제에 있어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봄<sup>63)</sup>
- 회사채는 할인 발행 시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상각할 수 있으나, 주식의 할인발행에 대해서는 상각할 수 없음

59) Fin Hay Realty Co. v. United States, 398 F.2d 694, 696(3d Cir. 1968)

60) 렌더링 및 그리스 제거 서비스의 미국 내 선두기업 중 하나임

61) Donald R. Ames(1980), p. 1024

62) Donald R. Ames(1980), p. 1022

63) Donald R. Ames(1980), p. 1021

- 발행자는 부채와 관련된 수수료와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나, 주식의 발행과 관련된 비용은 공제되지 아니함
- 미국은 기업의 자본조달에 이용된 금융상품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미국세법 제385조<sup>64)</sup>가 1980년 12월 29일에 발의되었으나, 규정으로 야기되는 문제로 인해 1983년에 철회함
  - 당초 제안된 법안은 1982년 6월 30일 이후의 거래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됨<sup>65)</sup>
  - 그러나, 해당 규정은 1982년 3월 10일에 청문회에서 수정을 위한 추가적인 시간을 요함에 따라 최종 수정이 완료된 이후 90일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시행이 지연되었으나, 1983년 1월 1일 이전에 법안이 발효되지 아니함<sup>66)</sup>
  - 결국, 1983년 재무부는 규정의 문제점들로 인해 철회하게 되었음<sup>67)</sup>
- 미국세법 제385조의 내용과 법안 발의 후 짧은 기간 내 철회하게 된 이유에 대해 다음에서 좀 더 살펴보자 함

## 나. 부채 · 자본의 구분

### 1) 세법적용의 원칙

- 미국은 납세자의 정당한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실질과세 원칙과 사업목적 원칙에 따라 세법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실질과세 원칙(substance over the form doctrine)은 미국 국세청(IRS)이 거래의 법적 형식을 넘어서 경제적 실질까지 파악하여 과세할 수 있는 원칙임<sup>68)</sup>

64)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385>, 검색일자: 2016. 02. 17.

65) Felix B. Laughlin(1982), p. 14

66) Felix B. Laughlin(1982), p. 14

67) Treasury Decision 7920, 1983-2 CB69

68) 최용선 외(2013), p. 37

- 사업목적 원칙(valid business purpose doctrine)은 납세의무자가 사업상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원칙임<sup>69)</sup>
- 실질과세 원칙과 사업목적 원칙은 세법상 여러 부분에서 명문화되어 있음
  -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 제482조에서는 IRS가 거래의 법적 형태를 경제적 실질로 성격을 재규정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sup>70)</sup>
    - IRC 제482조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그 외 조항들이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음
    - IRC 제269조: 특정 손실 인수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
    - IRC 제446조(b): 납세자의 회계처리가 “소득을 명백히 반영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청이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
  - 납세자들이 실질적 위험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무위험 자산으로 형식을 변경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됨<sup>71)</sup>
    - 위험자산에 대한 수익은 일반적으로 자본이득세율로 과세되는 반면 무위험 자산에 대한 수익은 경상소득세율로 과세(또는 소득공제)됨
    - 예를 들면, 실제는 위험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주식 등)를 무위험 이자율로 외관을 보이게 하여 차입(채권 등)하여 자본이득세율이 보다 높은 경상소득세율로 소득공제(이자 지급)를 하고 수익에 대한 과세는 자본이득세율이 되는 경우 납세자는 조세를 효과적으로 회피하게 됨<sup>72)</sup>
  - 그러나 법원에서 금융상품을 판단하기 위해 적용하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논거를 통한 판결과 관련하여 자주 승소되지는 못하였다고 밝힘<sup>73)</sup>
    - 실질과세가 빈번하지 않다는 것은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임

69) 최용선 외(2013), p. 36

70) 최용선 외(2013), p. 38

71) 최용선 외(2013), p. 37

72) 최용선 외(2013), p. 38 같은 뜻

73) 최용선 외(2013), p. 37 같은 뜻

- 미국 법원에서도 “기업에 대한 위험을 안고 투자를 하였는지 또는 채무인지의 구별에서는 어느 요소도, 심지어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것까지도 결정적이라 할 수 없다”<sup>74)</sup>고 판시한 것을 참고할 수 있음

## 2) 부채 · 자본의 구분방법

### 가) 과거 규정

- 미국세법 제385조에서는 혼성금융상품(Hybrid instruments)을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거나, 고정금액이 아닌 금액을 지급 받는 상품으로 정의하며,<sup>75)</sup> 자본이나 부채에서 발생하는 특정 이익의 처리에 대하여 규정함
  - 규정은 ‘권한위임에 대한 내용’, ‘적용 기준’, ‘특정이익의 분류효과’를 다루고 있음
- 미국세법 제385조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는 재무부 장관에게 그 세부사항을 위임하고 있음<sup>76)</sup>
  - 재무부 시행규칙에서는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안의 판단을 돋기 위한 예시 혹은 판단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미국세법 제385조는 특정 상황에서 법인–주주 관계 혹은 채권자–채무자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sup>77)</sup>
  - 금전 혹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보상을 위한 대가에 무조건적 계약의 여부
    - 지불요구 시 무조건적 지급
    - 지정된 날짜에 특정 금액, 고정된 이율의 이자를 무조건적 지급하는 계약이 있는지 여부

---

74) 이창희(2015), p. 518

75) 재무부 규정(Treas. Reg) §1.385-5(a), (b), (d) (Supp. 1981)에 규정되었으나, 해당 규정은 현재 철회됨

76) 미국세법 제385조(a)

77) 미국세법 제385조(b) (1), (2), (3), (4), (5)

- 기업의 모든 부채에 대해 우선하는지 혹은 종속되는지 여부
  - 기업의 자산 · 부채의 비율
  - 기업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 주식의 보유와 쟁점 투자 사이의 관계
- 이 기준에 따른 분류효과는 발행 당시의 발행자 특성이 발행자와 해당 이익의 수혜자에게 귀속되며, 발행자와 수혜자 간에 일관되지 않은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세정당국에 신고하여야 함<sup>78)</sup>
- 미국세법 제385조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재무부는 시행규칙에 몇 가지 원칙을 규정함
- 투자자의 부채와 주식보유 비례(Proportionality), 과도한 부채(Excessive Debt), 금융상품의 계약변경(Change in Terms of the Instrument), 이자와 원금 채무 불이행(Failure to Pay Interest and Principal When Due), 명시되지 않은 의무(Unwritten Obligations), 부채로의 우선주 재분류(Reclassifying Preferred Stock as Debt) 등임

#### 첫째, 비례원칙

- 비례기준은 투자자가 자본과 부채를 실질적 비례하여 보유하는 것이라면, 부채를 자본으로 재분류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그 보유비율에 대한 설명이 명시되지 아니함
- 비례적으로 보유한다는 것은 투자자가 자본과 같이 부채를 투자의 성격으로 보유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 Donald R. Ames(1980)의 논문에서는 해당 규정이 투자가 아닌 채권 · 채무관계를 독립적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규정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sup>79)</sup>
    - 예를 들어, 부채가 합리적 이율에 기인하지 않는다면, 자금 조달을 위한 것이 아닌 투자로 볼 수 있음

---

78) 미국세법 제385조(c) (1), (2)

79) Donald R. Ames(1980), p. 1025

- 그러나 해당 예시는 합리적 이율과 관련하여 소규모 폐쇄기업의 경우 동일 상황, 동일 기업이 존재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기업의 이율을 비교하기 어려움
- 당초의 재무부 시행규칙은 객관적 Test를 통해 납세자에게 확실성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투자의 성격으로 보유하였는지를 보기 위한 이율의 합리성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함

비례와 관련된 재무부의 예시

(Tress. Reg. § 1.385-6(a)(6), Examples (2) and (3) (Supp.1981).)

Example(2)와 (3)은 주주 3인은 동일하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하여 비례원칙을 적용할 예시를 제시함<sup>80)</sup>

**Example(2)**

- 부채의 90%는 세 주주에 의해 다양하게 보유하고, 부채의 10%는 독립 채권자가 보유함
- 이 경우, 주주 부채는 비례규정을 적용함

**Example(3)**

- 주주는 주식과 부채를 동일하게 소유하고 독립 채권자는 부채의 70%를 보유함
- 부채와 자본의 보유는 비례적이지 아니함

### 둘째, 과도한 부채

- 과도한 부채기준<sup>81)</sup>은 발행 회사의 금융상품 조건과 금융구조가 합법적 대출기관에서 대출할 수 있는 자격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금융상품은 자본으로 처리된다고 규정함
- 발행 법인이 문제가 되는 대출에 합법적 대출기관이 동의를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해당 금융상품은 부채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sup>82)</sup>
- 기업이 기준을 만족할 수 없다면, 주주인 채권자는 지분에 비례하여 부채를 자본으로 재분류해야 함

80) 해당 예시에 따라 독립 채권자가 50%를 보유하거나 그 이상 기업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면, 주주 부채는 비례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Donald R. Ames(1980)은 추론함

81) 재무부 규정 section 1.385-6(f)(2), 해당 조항은 현재는 철회됨

82) Donald R. Ames(1980), p. 1026

- 그러나 해당 규정은 자금조달을 이행하기 위해 주주 이외에 다른 누군가의 판단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됨<sup>83)</sup>
  - 재무부의 이러한 접근방법은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의무에 대한 재분류를 어렵게 할 수 있음<sup>84)</sup>
  - 또한, 대출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리적 요인이나 그 외 여러 요소가 존재할 수 있음
  - 이는 당초 법안에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 의도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셋째, 금융상품의 계약변경

- 금융상품의 계약변경<sup>85)</sup>은 독립적 채권자가 만기연장이나 조건의 상당한 변경을 동의한다면, 해당 일자에 변경된 특성으로 상품이 새로이 발행되는 것으로 보아 자본·부채를 구분함
  - 즉, 합의한 날의 속성에 따라 부채는 주식으로 재분류될 수 있음
  - 상당한 변경에 대한 명확한 세부지침은 제시되지 아니함
    - 변경에 있어 채권·채무거래에 상호 상쇄되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자 혹은 채무자에게는 개별 당사자로 볼 경우에는 상당한 변경에 해당되므로 재분류될 여지가 발생함
  - 규정에 명확하게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독립적 채권자가 상호 상쇄되는 계약변경에 동의한다면 재분류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Donald R. Ames(1980)는 밝힘
- 그러나, 해당 규정은 독립적 채권자를 찾기 어려운 소규모 폐쇄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상당한 변경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비판됨
  - 소규모 폐쇄기업의 경우에는 독립적 채권자보다는 주주에 의한 대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됨

83) Donald R. Ames(1980), p. 1026

84) Donald R. Ames(1980), p. 1027

85) 재무부 규정 1.385-60(j)(1), 현재 해당 규정은 철회됨

- 따라서 상당한 변경은 부채의 시장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sup>86)</sup>

#### 넷째, 이자와 원금 채무불이행

- 이자와 원금에 대한 채무불이행 상황에 처한 독립적 채권자로서 일반적으로 가능한 구제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금융상품은 주식으로 재분류될 수 있음
- 소규모 기업에 자금을 빌려준 주주는 기한 내에 지급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가지게 됨
- 또한 이자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주주는 독립적 채권자로서 수행했을 구제노력을 입증하여야 함
- 이러한 규정은 이자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부분일 수 있으나, 독립적 채권자로서 권리의 행사하는 주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음<sup>87)</sup>

#### 다섯째, 명시되지 않은 의무

- 명시되지 않은 의무는 이율이 합리적이지 않고, 과세연도 말의 부채 · 자본 비율이 1보다 큰 경우 상품의 재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sup>88)</sup>
- 재무부는 명시되지 않은 의무를 통한 사실상 자동 분류를 요구하게 되는 것임
- 명시되지 않은 모든 의무가 자본에 대한 기여로 본다면, 모든 원금상환과 이자 지급은 배당으로 처리될 것임
- 그러나, 일반적 상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명시되지 않은 경상적 의무의 경우에 이에 해당되는 선의의 부채에 대하여 규정이 너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sup>89)</sup>

---

86) Donald R. Ames(1980), p. 1028

87) Donald R. Ames(1980), p. 1030

88) 재무부 규정 section 1.385-7, 현재 철회된 규정임

89) Donald R. Ames(1980), p. 1031

- 재무부에서는 이러한 엄격함으로 인해 동 규정의 상정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법안을 제안함
  - 주주는 지정된 시한 내 재분류의 원인이 되는 어떤 의무든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이 제안됨

#### 여섯째, 부채로서 우선주의 재분류

- 원금이나 이자의 성격에서 고정된 지급을 하는 우선주에 대해서는 부채로 처리할 수 있음<sup>90)</sup>
  - 부채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요인이 무조건적인 원금 회수와 이자지급을 위한 것임에 따라, 고정된 이자나 원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우선주를 자본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임
- 그러나, 부채의 특성 중 하나인 무조건적 상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재무부의 규정은 청산 혹은 해산 시 우선주 주주의 상환청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려할 경우 부채로 분류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즉, 우선주 주주의 해당 지급에 대한 반환청구가 발행회사의 채권자를 종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경우 이러한 반환청구에 무조건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부채 · 자본을 판단하기 위한 다른 고려요소는 우선주 주주의 요구가 발행회사의 모든 채권자를 포함하여 우선하는지 여부이나, 이는 자본과 부채를 구분하기 위한 고려요인이 되지 못함
  - 우선주는 주주가 주식을 비례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상기 비례규정에 따라 다시 자본으로 분류됨

#### 나) 현재 규정

- 재무부의 시행규칙이 철회된 1989년 이후 기준을 통한 일반적 구분을 포기하고 문제가 제기되는 쟁점에 대한 대책으로 이자의 손금 산입제한을 제한하고 있음<sup>91)</sup>

90) 재무부 규정 section 1.385-10(a), 현재 철회된 규정임

91) 이창희(2015), p. 891

- 고수익 할인사채(junk bond) 이자의 손금산입을 제한함<sup>92)</sup>
  - 고수익 할인채의 할인액이 만기에 실현됨에도 불구하고 기간에 대응하여 손금인식이 된다는 점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할인액 중 비적격 부분(disqualified portion)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을 제한함
  - 할인액의 나머지 부분도 지급할 때까지 공제를 유보함
- 부채비율이 지나친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을 제한함<sup>93)</sup>
  - 과세연도의 초과이자비용이 발생하고,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부채 · 자본비율이 1.5를 초과한다면 적용함
  - 초과이자비용은 법인의 순이자 비용이 조정 과세소득(adjusted taxable income)의 50%와 초과이월결손을 합한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임
  
- 그러나, 부채와 자본의 성격이 섞인 혼성금융상품은 명칭에 상관없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이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sup>94)</sup>
- 미국 세법에 부채와 자본의 차별적 규정을 많이 마련하고 있으나, 상품의 고정된 정의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sup>95)</sup>
- 미국 법원은 기업에 대해 위험을 안고 투자를 하였는지 또는 채무인지의 구별에서는, 어느 요소도 심지어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것까지도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봄
  
- 2010년 초, IRS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채 · 자본에 대하여 개별 유권해석(private letter ruling, PLR)을 납세자에게 회신할 수 있도록 함<sup>96)</sup>
- 납세자가 주식으로써 금융상품을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지지할 수 있는 경우

92) 미국세법 제163조(e)(5)

93) 미국세법 제163조(j)

94) 이창희(2015), p. 891

95) IFA(2012), p. 772

96) Rev. Proc. 2010-3([https://www.irs.gov/irb/2010-01\\_IRB/ar08.html](https://www.irs.gov/irb/2010-01_IRB/ar08.html), 2016. 1. 25. 접속)

- 납세자가 유권해석의 회신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3) 금융상품별 구분 사례

- 전환사채는 부채로 구분되나, 의무전환사채(mandatorily convertible bonds)<sup>97)</sup>의 경우, 의도적으로 구조화하지 않는다면 자본으로 구분될 수 있음<sup>98)</sup>
  - 전환사채의 이자와 사채발행할인차금은 일반적으로 공제 가능함
  - 의무 전환사채는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될 것을 전제로 발행되는 채권으로 과세목적상 부채로 분류되더라도 전환지분에 상당하는 이자는 공제 가능하지 아니함
- 상환우선주에 대하여 각각의 판례별로 달리 판단하고 있으며 발행자의 통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부채 혹은 자본으로 판단함<sup>99)</sup>
  - 법원은 발행자가 통제할 수 있다면 자본으로 분류하고, 발행자의 재무상황에 관련 없이 이자지급과 유사하게 배당을 수령하게 된다면 부채로 분류한다고 판단함
    - Brown v. Shell Canada, Ltd 사건에서 의무적 상환일, 배당지급 요구, 미지급배당에 대한 추가적인 배당과 이자를 포함하는 규정으로 인해 부채로 주장되었으나, 법원은 지급불능의 상황에서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였고, 자본으로 판시함<sup>100)</sup>
    - Pereira v. Dow Chemical Co 사건에서 법원은 1인 주주에 의존하는 회사가 발행한 우선주의 주주는 회사의 재정 상태에 관계없이 상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배당이 증가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여 채무의 성격으로 보았음
  - 참고로, US GAAP에서는 상환 가능성이 의존적인 우선주에 대해서는 상환이 불확

97) 의무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것이 강제된 사채로,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발행을 금함

98)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2009), p. 35

99) <http://www.monitordaily.com/article-posts/debt-equity-classification-hybrid-securitie/>,  
검색일자: 2016. 1. 25.

100) 143 B.R. 468, 471(Bankr. E.D. Tenn. 1992)

실하다고 보아 자본으로 구분하고, 강제적으로 상환되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채로 분류됨<sup>101)</sup>

### 3. 호주

#### 가. 개관

- 호주의 은행들은 바젤 III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확대하고 있으며, 아시아권에서 발행을 주도하고 있음
  -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로 인하여 투자자들의 영구채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발행자의 신용 위험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의 발생 시 투자금 상실 가능성 또한 증대되고 있음<sup>102)</sup>
-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발행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주는 세법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법적 형태에 따른 부채 · 자본 분류에서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의 방향으로 개정함
  - 기존 법령의 입장에서는 법적 형태가 우선되었으나, 2001년 개정 세법에서는 거래의 실질과 원천, 의무의 경제적 실질에 의한 구분이 더 중시됨<sup>103)</sup>
  - 상기 개정은 연결세제, 과소자본세제에 영향을 미치며 이자,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세법개정을 통해 법령상 부채 · 자본 Test 규정을 명시한 것은 공제 가능한 이자와 적격 배당의 구분, 과소자본세제<sup>104)</sup>의 적용을 위한 부채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임<sup>105)</sup>

---

101) US deloitte(<http://www.iasplus.com/en-us/standards/ifrs-usgaap/debt-eqcaptr>, 검색일자: 2016. 1.15.)

102) 한국금융연구원(2014), p. 19

103) IFA(2012), p. 69

104) Division 820 of the Income Tax Assessment Act 97

105) Paul Abbey(2012), p. 72

- 그러나 여전히 법령 해석상의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조세쟁송이 발생하고 있으며, 법원은 법에 명시된 구분 요건을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sup>106)</sup>
- 호주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은 이자와 배당의 구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부채 · 자본의 분류기준에 대한 검토가 유의적인 의미를 지님
  - 호주는 주주가 받은 배당에 대해서 적격배당(Franked dividend)제도<sup>107)</sup>를 이용하여 법인 차원에서 과세된 부분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하고 있음
    -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주주단계에서 배당액에 대해 기업이 납부한 세액을 가산하여 소득과 세액을 계산한 후 기업이 납부한 세액을 주주의 세액에서 공제함<sup>108)</sup>
  - 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경우 차입 법인의 소득에서 비용으로 공제되므로,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자본 중 법적으로 주식의 형태가 아닌 지분을 비주주 지분(Non-share equity interest)으로 분류하며, 회사로부터 배당을 수령할 수도 있음
  - 부채 Test를 통과한 주주 지분에 대한 배당은 일반 주식의 배당과 다르게 과세 처분되며 이러한 지분을 비주주 지분으로 분류함
  - 법인 차원에서 과세가 완료된 이익을 기반으로 배분된 적격배당을 수령한 주주는 세액공제를 받을 권리가 생기며, 해당 권리를 자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것이 인정됨
- 회계처리는 기본적으로 상법의 영향을 받으며,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음
  - 국제회계기준은 상장사 혹은 대기업집단의 경우에 의무 적용 중이며, 금융상품의 회계처리는 상법에 따른 투자관리 지침을 따르고 있음

---

106) Paul Abbey(2012), p. 92

107) 안종석(2012), p. 115

108) 안종석(2012), p. 47

## 나. 부채 · 자본의 구분

### 1) 세법적용의 원칙

- 부채 구분에 대한 기본 원리는 투자자에 대한 발행자의 실질적 상환의무의 존재 여부이며, 이는 거래의 법적 형태보다 경제적 실질에 기인하여 판단됨
- 부채 · 자본의 구분은 부채 · 자본 Test를 각각 시행하여 판단하되<sup>109)</sup>, 부채로 구분되기 위해서는 부채 Test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므로 보다 엄격하게 판단함
  - 부채 Test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은 부채로 분류하고, 모두 만족하지 못한 경우와 자본 Test의 요건을 일부 만족하는 것은 자본으로 처리함<sup>110)</sup>
  - 부채 · 자본 Test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채로 분류함<sup>111)</sup>
- 부채 · 자본 Test 시 지배집단의 구성원을 포함한 연결실체의 개념으로 판단함
  - 실질적인 확정 의무가 존재하는 실체가 거래구조상 재무적 이익을 누리지 못하였더라도, 연결실체의 입장에서 재무적 이익을 얻는다면 해당 거래는 부채의 분류 요건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함
  - 하나 이상의 기업들 간 거래는 연결실체로 판단하며, 과세관청은 어느 실체가 발행자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함

### 2) 부채 · 자본의 구분방법

#### 가) 부채

- 부채 Test Flowchart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다섯 가지 필수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모두 만족한 경우 부채로 분류 가능함

109) Paul Abbey(2012), p. 75

110) 호주 국세청, Guide to the debt and equity Tests, p. 27

111) 호주 국세청, Guide to the debt and equity Tests, 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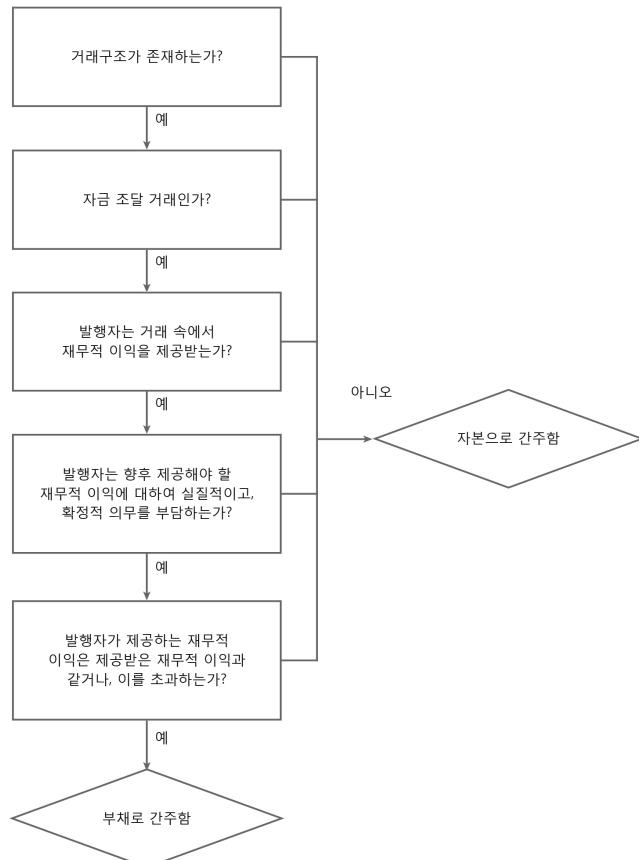
- 첫째, 거래구조(Scheme)가 존재해야 함
  - 거래구조는 거래의 연속은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의 거래 등으로 구성되며, 일방적 혹은 다자간의 계획, 제안, 이행 등을 의미함
- 둘째, 거래관계는 자금조달(Financing arrangement)을 포함해야 함
  - 자금조달이란, 발행자(issuer)에 의해 자금이 모집되거나 혹은 다른 금융거래 약정에 의하여 회사의 기금이 조성되는 거래를 의미함
- 셋째, 발행자(The issuing entity)는 거래관계에서 재무적 이익을 제공받아야 함
  - 제공받는 재무적 이익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그 어떤 것으로도 정의가 가능하며, 자산과 서비스를 포함함
  - 일반적으로 제공받는 재무적 이익은 자금 거래의 조건, 계약에 명시된 발행가격을 기반으로 산출됨
- 넷째, 발행자는 향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할 재무적 이익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확정적인 의무(an effectively noncontingent obligation)를 부담해야 함
  - 실질적이고 확정적인 의무의 존재는 자금조달 거래의 가격, 기간, 조건 등의 요소로 판단하며, 외관보다는 경제적 실질 개념이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만약, 투자로 인한 대가의 지급이 피투자회사의 경제적 활동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또는 피투자회사의 재량에 의해 지급이 결정되는 경우, 이는 비확정적 의무로 간주함
    - 예를 들어, 계약상 투자에 대한 대가로 피투자회사 이익의 1%를 지급하는 조건이 존재한다면, 해당 지급 의무는 비확정 의무로 간주함
- 다섯째, 발행자가 제공하는 재무적 이익은 발행자가 제공받은 재무적 이익과 같거나, 이를 초과해야 함
  - 재무적 이익의 산출방법은 거래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재무적 이익의 계산 시 10년을 기준으로 거래기간이 10년 이하일 경우 명목가치로 평가, 10년 초과 시 현재가치로 산출됨

- 현재가치 계산 시 적용하는 조정수익률은 부채 · 자본 Test에서 벤치마크하는 수익률의 75%를 적용함
  - 여기서 벤치마크 수익률이란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로서, 만일 발행자가 기존의 차입금으로 자본에 투자할 경우 산출 가능한 수익률, 기타 사항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연간 수익률임

〈표 III-1〉 재무적 이익 산출 방법

$$\text{재무적 이익} = \Sigma \frac{\text{기간별 이익의 명목가치}}{(1 + \text{조정 수익률})^{\text{기간}}}$$

[그림 III-1] 호주의 부채 구분 Flow chart



자료: 호주 국세청, "How do you determine whether an interest is a debt interest?", 도표

나) 자본

- 소득세법(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에서는 자본 Test를 위한 기준으로서, 자본에 대한 기본적 정의, 자금조달 거래 여부 및 지분의 형태에 의한 구분 항목을 제시하고 있음
- 자본 Test 항목 중 기본적 정의에 의한 구분은 4가지 항목(4 items)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음<sup>112)</sup>
  - 4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자본으로 분류 가능한 것은 아님
  - 주주 항목(item 1) 외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자금조달 거래 여부, 지분의 형태에 의한 구분 요건을 충족해야 자본으로 분류 가능함
- 첫째(item 1), 회사의 주주 혹은 구성원으로서 보유해야 함
  - 주주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의결권, 배당을 수령할 권리, 청산 시 잔여재산에 대한 배분받을 권리도 함께 보유하는 한편, 구체적인 보유 지분만큼 회사에 대한 유한책임이 존재함
- 둘째(item 2), 발행자(연결 실체 포함)의 경제적 활동 수행 결과에 따라 투자에 대한 대가가 결정되어야 함
  - 회사의 경제적 영업 활동 수행 결과 혹은 특정 활동의 결과에 의해 투자에 대한 대가가 결정된다면, 해당 투자지분을 자본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이는 혼성금융상품의 사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셋째(item 3), 발행자(연결 실체 포함)의 재량(discretion)에 의해 투자에 대한 대가가 결정되어야 함
  - 고정적 혹은 변동적인 투자의 대가를 수령할 권리가 부여된 지분으로서, 발행자에 의하여 투자의 대가가 결정되어야 함

---

112) SECTION 974-75(1) The Test for an equity interest

- 넷째(item 4), 발행자(연결 실체 포함)의 주식으로 전환될 예정이거나 혹은 전환될 권리가 존재해야 함
  - 주식으로 전환될 예정이거나 전환 가능성이 있는 지분의 경우 자본으로 분류하나, 제3자와의 교환 거래로 취득한 옵션의 경우, 해당 옵션이 자본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자본으로 분류하지 않음
- 자본의 기본적 정의 중 item 1이 아닌 나머지 item 2, 3, 4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 구조가 자금조달 목적의 거래 구조임을 추가로 충족하거나<sup>113)</sup>, 해당 지분이 소유권, 거래 구조에 대한 결정을 나타내는 형태를 취해야 함<sup>114)</sup>
- 회사의 지분 중 자본의 법적 형태를 벗어난 지분을 비주주 지분(Non-share equity interest)이라는 계정으로 별도 분류함
  - 주주 지분과 비주주 지분의 배당에 대한 개념은 소득세법에 전가 규정(imputation provisions)을 통해 제시되어 있으며, 회사에 의해 법인세가 납부된 후의 배당 (frankable dividends)으로 분류 가능함
- 비주주 지분의 발행으로 형성된 투자금은 비주주 자본 계정에 계상되며, 지분에 대한 출자 및 환급, 배당 내역 등 비주주 자본 계좌에 계상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비주주 지분으로 출자된 총 금액
    - 예를 들어, 비주주 지분으로 분류되는 연결실체 간 요구불 대출금(connected entity at call loan) 등이 계상 가능함
  - 중대한 변경으로 인하여 부채에서 자본으로 전환된 금액
  - 부채로 간주되는 연결실체 간 요구불 대출금
    - 연간 매출액이 2천만 호주달러 미만인 기업의 경우<sup>115)</sup>(부가가치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 부채 · 자본 Test를 거치지 않고 연결실체 간 요구불 대출금을 부채로 분류하는 특례가 존재함

113) SECTION 974-75(2) The Test for an equity interest

114) SECTION 974-75(3) The Test for an equity interest

115) Subsection 188-10(2) of the Goods and Service Tax(GST) Act

- 연결실체 혹은 채권자에 대한 비주주 지분 상환 금액
- 비주주 자본 계정은 재무회계 목적 대신 과세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음

[그림 III-2] 비주주 자본 계정(Non-share capital account)

<i>Non-share capital account</i>	
1/1/06 Repayment of loan - Director XYZ \$10,000 DR	1/7/05 Loan - Director XYZ \$50,000 CR

자료: 호주 국세청, "Debt and equity Tests: guide to the debt and equity Tests"

### 3) 금융상품별 구분 사례

- 가) 특수관계자 간 요구불 대출금
- 특수관계자 간 요구불 대출금(Connected entity at call loan)의 경우, 만기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나 채권자의 상환청구 시 언제든지 상환해야 하며, 부채 · 자본 Test를 거쳐 관련 손익을 이자 및 배당으로 분류함
- 연간 매출액이 2천만 호주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요구불 단기대출('at call')에 대한 Test를 거치지 않고 부채로 분류하는 특례가 존재함

회사는 지배주주로부터 연간 이자율 7%의 조건으로 5백만달러를 차입함. 상환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채권자의 절대적 재량에 따라 상환청구가 가능함. 회사는 연간 매출액이 2천만 달리를 초과하여 중소기업 특례를 충족하지 못함. 연간 벤치마킹 수익률은 6%로 가정함

-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특수관계자 간 요구불 대출 실행을 가정 시, 세법상 제시된 부채 · 자본 Test를 각각 적용하여 판단한 결과, 해당 금융상품은 양쪽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 따라 부채로 간주됨
- 자본의 기본적 정의 중 발행자의 재량권(item 3) 요건에 해당하므로 자금조달 거래 및 거래 구조의 형태 조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함 → 자본의 요건을 충족함

- 발행자는 해당 거래로부터 재무적 이익을 얻으며, 발행자에 의해 제공된 이익이 제공받은 이익을 초과함 → 부채의 요건을 충족함
- 자본 요건과 부채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 따라 부채로 간주함

#### 나) 상환우선주

-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상환우선주 발행을 가정 시, 세법상 제시된 부채 · 자본 Test를 각각 적용하여 판단한 결과, 양쪽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은 부채로 간주됨

회사는 2001년 8월 15일 상환우선주(액면가 2달러)를 발행하였으며, 해당 주식을 8년 후 액면 가치로 상환되거나, 혹은 그 전에 회사에 의해서 인수될 수 있음. 배당은 연간 발행가액의 7.25%를 지급해야 하며, 우선주의 배당이 지급되지 않아 연체되면 보통주의 배당 역시 지급될 수 없음

- 주주가 보유한 지분임(기본적 정의 item 1) → 자본의 요건을 충족함
- 배당의 경우 확정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원금에 대한 상환의무는 실질적이고 확정적으로 존재하며, 발행자가 제공하는 이익이 제공받은 이익과 같음  
→ 부채의 요건을 충족함
- 자본 요건과 부채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 따라 부채로 간주함

〈표 III-2〉 특수관계자 간 요구불 대출에 관한 사례

자본 Test	판단 기준	분석
자본 Test 1단계	• 주주 지분인가?	• 투자의 전반적 환급이 연결 실체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자본임 <sup>1)</sup>
자본 Test 2단계	• 거래 구조(Scheme)가 존재하는가?	• 발행자와 인수자(특수관계자)간 거래의 형태로 구조가 존재함
자본 Test 3단계	• 자금조달 거래의 구조인가?	• 발행자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약됨
부채 Test	판단 기준	분석
부채 Test 1단계	• 거래 구조(Scheme)가 존재하는가?	• 발행자와 인수자(특수관계자)간 거래의 형태로 구조가 존재함
부채 Test 2단계	• 자금조달 거래의 구조인가?	• 발행자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약됨
부채 Test 3단계	• 발행자는 거래관계 속에서 재무적 이익을 얻는가?	• 발행자는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을 통해 5백만달러를 수령함
부채 Test 4단계	• 발행자는 재무적 이익을 제공해야 하는 실질적이고 확정적인 의무가 있는가?	• 발행자는 연간 7%의 이자를 지급하는 실질적 확정채무를 부담함
부채 Test 5단계	• 발행자가 제공하는 재무적 이익은 발행자가 제공 받은 재무적 이익과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환기일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상환을 회피 가능한 의무로 볼 수 없으므로, 거래기간 10년 초과한 것으로 간주, 현재가치 계산 대상임</li> <li>• 이자 = 35만달러(5백만달러 * 7%)</li> <li>• 조정수익률 = 4.5% (시장 벤치마킹 수익률 6% * 75%)</li> <li>• 재무적 이익 = 35만달러 / 0.045 = 777만달러</li> <li>• 발행자에 의해 제공된 이익 777만달러 &gt; 제공받은 이익 5백만달러</li> <li>• 발행자에 의해 제공된 이익이 제공받은 이익을 초과함에 따라 부채로 분류함</li> </ul>
		↓
	최종 결론	부채로 간주

주: 1) item 3 of the table in subsection 974-75(1) of the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ITAA 1997)

자료: 호주 국세청, Connected entity at call loan, Debt and equity Tests : guide to the debt and equity Tests 사례 정리

〈표 III-3〉 상환우선주에 관한 사례

자본 Test	판단 기준	분석
자본 Test 1단계	• 주주 지분인가?	• 주식의 형태이며, 발행자의 주주에 해당하므로 출자 지분임

부채 Test	판단 기준	분석
부채 Test 1단계	• 거래 구조(Scheme)가 존재하는가?	• 발행자와 인수자 간 거래의 형태로 구조가 존재함
부채 Test 2단계	• 자금조달 거래의 구조인가?	• 상환우선주는 발행자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약됨
부채 Test 3단계	• 발행자는 거래관계 속에서 재무적 이익을 얻는가?	• 발행자는 상환우선주를 발행함에 따라 2달러의 재무적 이익을 얻음
부채 Test 4단계	• 발행자는 재무적 이익을 제공해야 하는 실질적이고 확정적인 의무가 있는가?	• 배당의 경우 발행자의 배당가능이익에 의해 지급이 결정되나, 연체 시 보통주의 배당까지 지급이 불가하고 원금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확정적인 의무가 존재하므로 부채로 분류됨
부채 Test 5단계	• 발행자가 제공하는 재무적 이익은 발행자가 제공받은 재무적 이익과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가?	• 거래 기간이 10년 미만이므로 현재가치 평가를 생략함 • 발행일 현재 발행자가 제공받은 지분의 가치는 2달러이며, 상환된 금액 역시 2달러임에 따라, 해당 지분은 부채로 분류됨

↓

최종 결론
부채로 간주

자료: 호주 국세청, “Redeemable preference shares, Debt and equity Tests: guide to the debt and equity Tests” 사례 정리

#### 다) 전환우선주

-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전환우선주 발행을 가정 시, 세법상 제시된 부채 · 자본 Test를 각각 적용하여 판단한 결과, 부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은 자본으로 간주됨

은행은 2001년 7월 1일 발행가액 100달러, 연간 배당률 7.5%인 전환우선주를 발행하였으며, 의무 전환일은 2006년 6월 30일임

- 주주가 보유한 지분임(기본적 정의 item 1) → 자본의 요건을 충족함
- 발행자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는 이익이 발행자의 배당가능이익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확정 금액의 지급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채 Test상 4단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부채 Test를 통과하지 못하여 자본으로 간주함

〈표 III-4〉 전환우선주에 관한 사례

자본 Test	판단 기준	분석
자본 Test 1단계	주주 지분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의 형태이며, 발행자의 주주에 해당하므로 출자 지분임</li> </ul>
부채 Test 1단계	• 거래 구조(Scheme)가 존재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행자와 인수자 간 거래의 형태로 구조가 존재함</li> </ul>
부채 Test 2단계	• 자금조달 거래의 구조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환우선주는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행됨</li> </ul>
부채 Test 3단계	• 발행자는 거래관계 속에서 재무적 이익을 얻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행자인 은행이 거래 구조에서 얻는 재무적 이익은 100달러임</li> </ul>
부채 Test 4단계	• 발행자는 재무적 이익을 제공해야 하는 실질적이고 확정적인 의무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당은 은행의 배당가능이익에 의해 결정되며, 전환권의 가치는 미미함에 따라, 향후 재무적 이익을 제공해야 할 실질적인 확정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움</li> <li>• 실질적인 확정채무의 존재 요건 불충족으로 부채로 분류되기 어려움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됨</li> </ul>



최종 결론

자본으로 간주

자료: 호주 국세청 Converting preference shares, Debt and equity Tests: guide to the debt and equity Tests 사례 정리

### 라) 전환사채

-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전환사채 발행을 가정 시, 세법상 제시된 부채 · 자본 Test를 각각 적용하여 판단한 결과, 양쪽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은 부채로 간주됨

회사는 2001년 7월 1일 15년 만기, 9달러의 전환사채를 발행함. 매년 7월 1일 7%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어떤 상황에도 이자 지급을 연기할 수 없음. 2007년 7월 1일 이후 회사는 조기상환이 가능함. 채권자는 9달러에 상환받거나, 채권당 주식 4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고 있음. 회사의 주식은 현재 1.75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기존의 회사채 이자율은 8%임

- 자본의 기본적 정의 중 주식 전환 가능성(item 4) 요건에 해당하므로, 자금조달 거래 및 거래 구조의 형태 조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자본으로 분류 가능함 → 자본의 요건을 충족함
- 발행자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는 이익이 제공받은 이익보다 크고, 발행자는 원금의 상환 혹은 주식으로의 전환을 통한 회피 불가능한 의무를 부담하므로 주식으로 전환 전까지는 부채로 분류함 → 부채의 요건을 충족함
- 자본 요건과 부채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 따라 부채로 간주함

〈표 III-5〉 전환사채에 관한 사례

자본 Test	판단 기준	분석
자본 Test 1단계	• 주주 지분인가?	• 지분 보유자에게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으며, 전환 시 회사의 자본을 구성할 수 있음
자본 Test 2단계	• 거래 구조(Scheme)가 존재하는가?	• 발행자와 인수자 간 거래의 형태로 구조가 존재함
자본 Test 3단계	• 자금조달 거래의 구조인가?	• 전환사채는 발행자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약됨
부채 Test	판단 기준	분석
부채 Test 1단계	• 거래 구조(Scheme)가 존재하는가?	• 발행자와 인수자 간 거래의 형태로 구조가 존재함
부채 Test 2단계	• 자금조달 거래의 구조인가?	• 전환사채는 발행자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약됨
부채 Test 3단계	• 발행자는 거래관계 속에서 재무적 이익을 얻는가?	• 발행자는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따라 9달리를 수령함
부채 Test 4단계	• 발행자는 재무적 이익을 제공해야 하는 실질적이고 확정적인 의무가 있는가?	• 연간 7%의 이자를 지급하는 실질적 확정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만기 혹은 채권자가 만기 이전에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9달리를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므로 실질적, 확정적 의무로 간주됨
부채 Test 5단계	• 발행자가 제공하는 재무적 이익은 발행자가 제공받은 재무적 이익과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상환이 가능하나, 이는 회피가능 의무로 볼 수 있으므로 거래기간은 15년으로 보아 현재가치 계산 대상임</li> <li>• 이자 = 0.63달러(9달러×7%)</li> <li>• 조정수익률 = 6%</li> <li>(기존 회사채 이자율 8%×75%)</li> <li>• 재무적이익 = <math>0.63/(1.06) + 0.63/(1.06)^2 + \dots + (9+0.63)/(1.06)^{15} = 9.87</math> 달러</li> <li>• 발행자에 의해 제공된 이익 9.87달러 &gt; 제공받은 이익 9달러</li> <li>• 제공된 이익이 제공받은 이익을 초과함에 따라 부채로 분류함</li> </ul>

최종 결론

부채로 간주

자료: 호주 국세청, "Convertible notes, Debt and equity Tests: guide to the debt and equity Tests" 사례 정리

## 4. 일본

### 가. 개관

- 일본의 회사채 시장에서는 정부의 강한 규제에 따라 적격 기준(Tekisai Kijun)을 충족 해야 사채 발행이 가능하였으나, 최근 발행에 대한 규제가 점차 완화됨에 따라 광범위 한 투자자들의 혼성금융상품 투자가 가능해짐<sup>116)</sup>
  - 소위 ‘잃어버린 10년’의 경기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격적인 영구채 발행이 시작되고 있으며, 시장에서도 영구채를 포함한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음<sup>117)</sup>
  - 다양한 금융상품의 등장으로 인하여 세법상 별도 구분에 대한 필요성을 과세당국에 서도 인식하고 있음<sup>118)</sup>
- 혼성금융상품의 부채 · 자본 구분에 따라 소득의 분류가 달라지며 이에 따른 과세방식 이 상이함
  - 일본의 소득세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이에 따라 부채 분류에 따른 이자소득 구분이 중요함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최선이나, 일본 과세당국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과세방식을 고수하고 있음
  - 배당을 수령하기 이전 소득단계의 과세분에 대하여, 법인의 경우 배당금 수익의 일정한 비율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며, 개인의 경우 배당세액공제를 통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함
    - 2009년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체계가 전 세계소득 과세체계(worldwide system)에서 속지주의 과세체계(territorial system)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외에서 수취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과세가 제외됨

116) IFA(2012), p. 393

117) 김희준(2015), p. 7

118) IFA(2012), p. 393

〈표 III-6〉 출자 비율별 배당금 수익 공제율

(단위: %)

출자 비율	공제율
33.3% 초과	100
5% 초과~33.3% 이하	50
5% 이하	20 <sup>1)</sup>

주: 1) 보험사 주주의 경우 40%의 공제율 적용  
 자료: IBFD(2015)

- 일본은 금융소득의 과세 차이가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제 개편을 통하여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최대한 단일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온<sup>119)</sup>
  - 이러한 개편은 조세부담이 금융상품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동자금을 최대한 다양한 소득범주에 투자되도록 할 것이라는 판단에 기인함
- 일본의 이자소득 및 특정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됨<sup>120)</sup>
  -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분리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상장주식의 배당소득(대주주 제외)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상장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5%이며, 이외의 배당은 20% (소득세 15%, 주민세 5%)의 세율로 과세됨
    -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5%, 이외의 이자는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됨

## 나. 부채·자본의 구분

### 1) 세법적용의 원칙

- 일본의 세법은 구체적인 규정 및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한, 형식주의적 접근에 의한 사법(The civil law)과 회계기준의 개념을 존중함

119) 일본 국세청([http://www.mof.go.jp/tax\\_policy/summary/income/kinyushotoku.pdf](http://www.mof.go.jp/tax_policy/summary/income/kinyushotoku.pdf), 검색일자: 2016. 1. 7.)

120) 국중호 외(2009), p. 74

- 새로운 형식의 금융상품이 발행되어 법적 형식에 따라 장부에 계상된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회계처리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음
- 이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과세관청의 판단에 기인함
- 법원이 거래의 실질에 근거한 접근으로 판단한 사례도 존재하지만, 과세관청은 실질적 접근을 통한 판단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음
  
- 재무보고상 회계처리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을 따르고 있으며<sup>121)</sup>, 일정 요건에 적용되는 기업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기업은 회사법 및 각종 규제의 감독상의 목적으로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처리를 요구받으며, 이에 의하여 과세소득의 기초가 작성됨
- 기업의 자본은 과세목적상 산출되는 납입자본의 시작점이라는 면에서 세무회계와 재무회계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

## 2) 부채 · 자본의 구분방법

- 금융상품의 부채 · 자본 구분 기준을 규정한 구체적인 조문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실무적으로 회사법에 근거한 법원의 판단을 따르고 있음
  - ‘형식보다 실질우선’(substance over form) 원칙을 요구하는 조문 또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법상의 정의를 따라 부채와 자본을 구분하고 있는 상황임
  - 회사법에 따른 특정 절차, 특정 요구조건을 충족한 회사채 발행과 출자는 근거 법령이 상이하며, 형식적 요소를 기준으로 부채 · 자본 구분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음
    - 회사채는 일본 법인에 의한 금전 청구권으로 회사법상 정의되어 있으며<sup>122)</sup>, 상환 방식과 만기에 대한 규정이 존재함<sup>123)</sup>

---

121) Japanese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JGAAP)

122) Law No. 86 of 2005, The Companies Act

123) Article 676 of The Companies Act

- 과세관청이 자본을 부채로 재분류하여 회사법상의 효과를 무효화하기에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의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함<sup>124)</sup>
  
- 현재 금융상품 발행 시 현존하는 법령에 의해 분류하는 것만으로는 모호한 면이 많아 논쟁의 여지가 존재하므로, 향후 적절한 법적 해결책이 필요함
- 일본은 기업들의 적극적 조세회피 전략(aggressive tax planning)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적 접근(cubbyhole approach)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향후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한 금융거래에 대비하여 포괄적 접근의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음
  
- 현행 규정에서는 부채 · 자본에 대한 명확한 구분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금융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몇 가지 대응방안과 발행제한 규정 등을 제시함
- 세법상 부인한 거래에 대하여 과세목적상 과세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는 규정과, 그 외 비용인정 제한 규정 등을 마련함
  
- 연결집단, 주주 등을 포함하여,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통해 과세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거래를 부인하여 재계산할 수 있음<sup>125)</sup>
- 금융상품의 법적 성질에 대한 분류가 명확하지 않을 시 거래당사자 간 분류를 통일 시켜야 한다는 요구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특수관계자 간 혼성금융상품 거래의 경우 과세관청의 판단에 의하여 재분류<sup>126)</sup>가 가능함
  
- 특수관계자 간 부당거래에 대한 소득 재계산 규정 이외에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 인정 제한 규정 등이 존재함
- 주주인 경영진에게 지급되는 상여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불합리한 거래를 통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될 경우 납세자의 세금환급을 부인함

---

124) IFA(2012), p. 402

125) Corporate Tax Law art.132, Income Tax Law art. 157

126) IFA(2012), p. 403

-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비용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과세관청은 다음과 같은 비용 인정 한도를 통해 제한함

〈표 III-7〉 일본의 비용 인정 한도

$$\text{비용 한도} = \text{납입자본} \times 0.25\% + \text{과세소득} \times 2.5\%$$

주: 법인세법에 따라 규정됨  
 자료: IFA(2012), p. 403

- 최근 빈번히 발행되는 신종증권(Innovative securities)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된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나, 신용평가 기준 마련 등의 신종증권 발행을 위한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음<sup>127)</sup>

### 3) 금융상품별 구분 사례<sup>128)</sup>

- 전환사채는 기간 내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채로서, 전환 전까지 세법과 각종 규칙에 의하여 부채로 분류됨
  - 주식으로 전환되기 이전의 사채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공제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며, 전환일 이후 미지급된 이자가 존재할 경우 공제 기회는 상실됨
  - 전환일 이후 배당에 대해서는 발행자 및 투자자 간 일반적인 배당으로 과세 치분됨
  - 전환사채의 처분을 통해 발생한 자본이득은 경상적인 과세소득에 포함됨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사채 부분은 부채로, 주식으로 행사된 부분은 자본으로 분류됨
  - 처분을 통해 발생한 자본이득은 경상적인 과세소득에 포함됨
  - 제로쿠폰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사례가 있으나 기존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과세처분과 유의적인 차이는 없음

127) 김희준(2015), p. 25

128) IFA(2000), pp. 429~435

- 우선주는 일본의 상법에 따라 상환 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발행되어 자본으로 분류되며, 배당 역시 일반적인 배당에 대한 과세처분을 따르고 있음
  - 우선주와 관련된 판례의 대부분은 특수관계자의 지분 비율을 낮추기 위해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러한 발행은 법적으로 규제된 비율을 따르기 위함
  - 최근 많은 은행들이 재무적 보강을 위하여 타 금융기관, 공공기관에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후순위채와 영구채는 BIS 비율 준수를 위한 자본보강 목적에서 많은 금융기관들의 해외종속회사를 통하여 발행되고 있으며, 회계 및 과세목적상 일반적인 사채로 간주됨
-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와 증권투자회사(Securities investment company, 이하 SIC)는 법인 실체로 인정되어 법인세 납부 의무가 존재하며, 해당 실체에 대한 투자는 과세목적상 자본으로 분류됨
  - 연간 이익의 90%를 초과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액에 대한 과세소득 공제가 인정됨
- 신용연계증권(Credit link bonds)은 사전에 약정된 원금, 만기, 이자율 외에 원금상환과 이자 지급의 경우, 기초 대상 회사의 신용위험에 따라 영향을 받는 증권으로서, 과세목적상 일반 사채로 간주되어 동일하게 취급됨
  - 신용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인하여 상환에 문제가 발생 시 투자자들의 손실로 인식이 되나,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주가연계증권(Stock price link bonds)은 증권거래법상 규정되어 있으며, 이자 및 원금의 상환이 기초 대상 회사의 주가, 주가 뮤음(basket) 혹은 주가 지수에 의해 결정되며, 회계처리 및 과세목적상 일반 사채로 간주되어 동일하게 취급됨
  - 주가연계증권의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투자자의 과세소득에 포함됨
- 주식상환보장증권(Bonds redeemable by stock of other issuers)은 약정 일자에 특

정 가격 밑으로 주가 하락 시, 기초 대상 주식으로 원금이 상환되어야 하는 증권으로서, 회계처리 및 과세목적상 일반 사채로 간주되어 동일하게 취급됨

- 상환은 공정가치인 기초 주식과의 등가 상환 및 주식 취득이 복합된 거래로 간주되며, 상환 시 투자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됨

□ 회사법에 따라 사채 발행 요건을 충족하여 발행되는 조건부 전환증권(Contingent Convertible bond)<sup>129)</sup>은 사채의 법적 형식을 따르며, 소득세법상 과세목적으로도 부채로 분류됨

- 조건부 전환증권의 만기는 대체로 30년에서 50년 정도로 장기임
- 거래 구조와 계약상 조건이 일반 회사채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채에 대한 과세처분을 동일하게 따름
  - 일반 사채에 대한 이자비용이 한도 내 비용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조건부 전환증권의 이자비용도 동일하게 인정됨
- 조건부 전환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될 때는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과 동일하게 처리됨
  - 전환이란 관련된 미실현 손익이 실현되는 사건이며, 기존 사채의 가치와 전환될 주식의 가치는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함<sup>130)</sup>
- 회사채 발행에 대한 규제의 완화 및 금융기관의 신용보강 차원에서 기업들의 조건부 전환증권 발행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잠재적인 투자자와 발행자의 입장에서 도 부채 · 자본의 분류가 주요한 관심 사항임

---

129) Tax management international forum(2012), p. 45

130) Corporation Tax Law, Art.61-2, para.13

〈표 III-8〉 일본의 금융상품별 세법상 분류 요약

금융상품	발행자	투자자
전환사채 <sup>1)</sup>	부채	이자
신주인수권부사채	부채	이자
우선주 <sup>2)</sup>	자본	배당
영구채 <sup>3)</sup>	부채	이자
조건부전환증권 <sup>4)</sup>	부채	이자

주: 1), 4) 사채에서 주식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적용함  
 2) 우선주의 상환 여부는 상관없이, 모든 우선주를 포함함  
 3) 후순위채를 포함함

자료: IFA(2012)

## 5. 독일

### 가. 개관

- 독일은 사업의 운영에 있어 자본화 방법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회사법, 은행과 자본시장법(특히, 바젤 I과 II), 회계와 세법에서 제약이 있음<sup>131)</sup>
  - 10년 동안 독일 회사법은 최소 25,000유로의 자본을 보유할 것을 유한책임 회사에 요구하였으나, 유럽공동시장(Common European Market), 영국 유한회사의 개방과 함께 2008년에 지분보유 요건이 완화됨
    - 유럽공동시장과 영국 유한회사는 독일과 같이 최소자본 유지규정을 요구하지 아니함
    - 시장 개방으로 국외 유럽회사(foreign European company)와 함께 제한된 유한책임조합(limited partnership), 영국 유한회사 등이 독일에서 운영되는 기업의 일반적 형태임
  - 세법상 법인의 영업비용으로서 사업관련 이자비용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채권자의 법적 형식에서 개인이나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양한 규정이 적용됨

131) IFA(2012), p. 309

- 전 세계 혹은 독일에 거주하는 투자자인지 여부에 따라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구조는 상당히 다양함
- 바젤 II의 도입으로 신용등급을 높이고자 메자닌 자본(Mezzanine Kapital)<sup>132)</sup>이라 고 불리는 혁신적인 혼성금융상품 개발을 시작하게 됨
- 독일의 기업은 과거 낮은 부채 · 자본비율을 가지고 있으나, 부채 · 자본비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채의 대안 금융상품에 주목하기 시작 함<sup>133)</sup>
- 중 · 소규모의 기업은 고전적인 금융상품, 다시 말해 자본과 주주대출, 금융기관대출에 주로 의존하고 있음
- 독일의 통계에 따르면 1980년 초반에는 평균 부채 · 자본비율은 20.5%이었으나, 2009년에 중 · 소규모 기업의 부채 · 자본비율은 20%, 대기업의 부채 · 자본비율은 27.9%에 달함<sup>134)</sup>
  - 가업승계 기업의 경우에는 동일 규모의 기업보다 부채 · 자본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음
- 반면, 대기업은 바젤 II의 규제에 따라 대안적 금융상품에 주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자본조달이 이루어짐
- 자본과 부채의 구분에 따라 과세 차이가 발생하므로 부채의 대안 금융상품에 대한 독일의 구분 기준에 대하여 이하에서 살펴보기로 함
- 독일은 부채나 자본의 구분에 따른 일반적으로 부채에 따른 이자지급 또는 이자소득, 자본에 따른 배당지급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달리 이루어짐
- 투자자의 입장에서 사업용 자산인 지분의 참여로 얻은 분배소득은 주주단계에서 소득의 일부만을 과세(partial income regime)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함  
배당의 60%만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개인의 일반 한계세율을 적용함

132) 메자닌은 1층과 2층 사이의 라운지를 의미하는 이탈리아어로, 자본과 부채의 경계에 있는 것을 말함

133) IFA(2012), p. 307

134) IFA(2012), p. 309

- 다른 기업에 분배하는 배당은 실질적으로 95% 과세 면제되며, EU회원국 내에서 설립된 기업에 배당은 일정 요건하에서 과세 제외됨
- 개인의 이자소득, 자본소득 등에 대하여 25%(26.375% 연대세를 포함한 경우)의 단일세율로 과세됨

## 나. 부채 · 자본의 구분

### 1) 세법적용의 원칙

- 일반적으로 독일은 세법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세무처리의 간소화, 일관성의 목적에 따라 세무 목적상 독일 GAAP을 따름
- 세법의 목적에 따라 세부 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로는 세법과 GAAP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게 됨
  - 독일은 2005년부터 IFRS를 도입하여 이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sup>135)</sup>하되, 개별 기업의 경우에는 독일 GAAP에 따라 작성<sup>136)</sup>하고 있음
  - 독일 GAAP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세법은 담세력에 근거한 과세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GAAP에 의해서만 세무처리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함
- 독일은 과거 회계처리를 근거로 과세처분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을 규정하여 세정당국이 정확한 과세소득을 용이하게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최근에는 이 원칙이 법의 획일화와 간소화 목적으로 정당화됨
- 국외에 기반을 둔 법인의 경우, 독일 GAAP에 근거한 세무회계처리의 원칙은 국외 GAAP과 관련하여 적용되지 아니함
- 이러한 원칙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발행된 기관에 적용되는 국외 민사법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함

---

135)여은정 외(2007), p. 175

136)황인태 외(2009), p. 39 같은 뜻

## 2) 부채 · 자본의 구분방법

- 독일 GAAP에서 부채 · 자본의 구분은 상법을 따르고 있음<sup>137)</sup>
  - 채권자에 대한 법적 의무가 존재하는 금융상품은 자본으로 처리되고, 그 외는 부채로 처리됨
    - 독일 파산법에서 자본으로 분류되고, 후순위인 주주대출에 대해서도 이러한 규정이 적용됨
  - 이익참가권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부채로 처리하나, 특정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가정하여 자본으로 분류함
- 세법은 GAAP이나 민법(상법)에 따르며, 과세목적상 금융상품의 구분을 조정하고 다른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재분류하거나 세무결과를 수정함
  - 일반적으로 세법에서 자본증가를 발생시키는 자산이 (a)무상으로 이전(free-retransfer) 되지 않고 (b)청산 · 파산의 상황에서 법인의 부채를 부담해야 한다면, 자본으로 처리함
  - 세법에서 재분류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주로 이용되는 세부규정은 금융상품을 재분류하지 않고 과세소득만을 수정함
- 독일은 부채 · 자본의 재분류 외에 일반적으로 과세소득을 수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부채 · 자본의 구분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 이자공제상한 규정: 영업에 따른 순이자비용의 공제한도는 해당 사업연도(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 세무상 EBITDA(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전 영업이익)의 30%로 제한함
    - 이자공제상한 규정을 초과한 이자는 이월 가능하며, 5년 내 공제 가능함
    - 순이자비용이 300만유로 이하인 경우, 이자공제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관련 이자지급 법인이 계열사가 아니라면, 이자공제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137) IFA(2012), pp. 316~317

- 관련 이자지급 법인이 계열사라면, 이전 연도의 재무제표일 현재에 그룹의 자본 비율보다 높거나 동일함을 증명할 경우 이자공제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은닉된 이익처분(hidden profit distribution)<sup>138)</sup>: 주주와 처분회사의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처분과 관련하여 주주에게 처분된 비용을 부인하고 자본수입(equity proceeds)으로 처리함<sup>139)</sup>
  - 세무상 ‘은닉된 이익의 처분’과 ‘소득조정으로 소득이 감소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기 위함임
  - 이자를 은닉 이익처분으로 재분류하지 않고, 이자공제상한 규정의 보완적 조치로 규정을 마련함
- 그 외 부채 · 자본의 구분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채가액의 인식 조정, CFC 규정 등을 마련함

### 3) 금융상품별 구분 사례

- 세법에서 관련 법률(상법, 파산법)과 달리 처리되는 부채 · 자본의 일반적인 논의 사례는 이익참가권리 등과 같은 혼성금융상품과 후순위채가 있음<sup>140)</sup>
- 이러한 특정 상황에서는 GAAP을 준용하는 법적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GAAP이 준용하는 상법의 구분 기준과 달라짐
- 세법에서 이익참가권리(jouissance rights)는 특정 상황에서 자본으로 처리하나 상법은 부채로 처리함
  - 이익참가권리는 주주의 권리와 비교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경제적 권리만 가지는 증권으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응자에 대한 보상이 이익에 의존함

138) 은닉된 이익처분이란 기업이 결산을 통한 순이익의 산출 전에 출자자 · 임원 등에 대해서 본래 이익처분의 형식을 통해서 지출해야 되는 것을 손실 또는 비용의 형식으로 지출하는 것임(영화 조세통령)

139) Corporation Tax Act Section 8 paragraph3 sentence 2

140) IFA(2012), p. 318

- 발행 자본금의 분할상환금은 발행자의 청산이나 파산의 상황에서 다른 모든 채권자에 종속됨
  - 결손금은 우선 이익참가권리에 따른 자본금부터 상계처리하고, 그 이후에만 지분을 상계시킴
  - 이익참가권리의 만기는 장기임
  - 소득세법(Income Tax Act 2a Section5)은 실제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부채나 세무상 적립금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채의 분할상환 시 지급할 이익이 발생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자본으로 처리함
  - 또한 이익참가권리(jouissance rights)는 GAAP에서는 자본으로 처리됨
- 후순위 주주대출이나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파산법(insolvency law)에 따라 부채로 처리하지 아니하나, 세법에서는 여전히 부채로 처리함<sup>141)</sup>
- 즉, 세법에서는 법인의 과다채무로 인한 파산 가능성에 관련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아니함
  - 연방법원(IR 127/90, DStR 1992, 496)은 자본의 적립보다 대출 공여를 선택한 주주의 의사결정은 GAAP을 준용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과세목적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판시함
- 독일 GAAP을 따르는 원칙에 입각하여 세법은 GAAP에 따라 전환사채를 부채로 구분하나, 의무전환사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어 논란이 있음<sup>142)</sup>
- 전환권과 사채는 분리하여 인식하고, 전환권은 자본준비금(capital reserve)으로 처리함

---

141) IFA(2012), p. 318

142)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2009), P. 14

## 6. 싱가포르

### 가. 개관

- 싱가포르는 지속된 저금리 상황에서 고금리를 추구하는 수요가 높은 편이며, 한국보다 고위험 고수익 채권(High yield bond)에 대한 채권시장이 발달한 편임
  - 반면에, 금융당국은 신종자본증권인 영구채의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완전한 이해 없이 과도한 위험 상품에 투자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음<sup>143)</sup>
-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싱가포르 과세관청(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이하, IRAS)은 2014년 혼성금융상품(Hybrid instrument)에 대한 과세지침을 공개 함<sup>144)</sup>
  - 해당 지침은 부채와 자본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방법을 기술하고 있음
  - 이는 발행자의 손금산입 여부 및 투자자, 잠재적 투자자의 과세 처분 여부에 영향을 미침
-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구분 체계는 법적 요소를 식별한 후, 실질 관계를 판단하는 단계 별 접근방법으로 이루어짐
  - 권리와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 사실 관계 등을 통한 판단의 단계를 거침
  - 법적 형태에 따른 구분은 해당 혼성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근거 하여 판단하는 방법임
  - 실질 관계에 따른 구분은 혼성금융상품의 발행 조건, 여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방법임

---

143) 김세용(2012), p. 14

144)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4), p. 102

- 자본과 부채의 구분에 따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차이가 발생하므로 부채와 자본에 대한 싱가포르의 구분 기준에 대하여 이하에서 살펴보기로 함
  - 이자소득의 경우, 승인된 은행이나 인가받은 금융회사에 예치한 예금이자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으며, 이외 예금, 전당포, 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음<sup>145)</sup>
    - 국내 파트너십을 통해 얻은 이자 또는 채무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자 또한 과세소득에 포함됨
  - 배당소득의 경우, 국내외 원천을 불문하고 비과세됨
    - 국내 법인의 경우 1단계 법인과세 방식(One-tier Corporate Tax System)을 적용하여,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 단계에서만 과세하고, 배당금을 수취한 주주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음
    - 국외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금은 1단계 법인과세 방식과 상관없이 비과세되지만, 거주자가 국내 파트너십을 통해 국외 원천 배당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과세됨

〈표 III-9〉 싱가포르의 발행자·투자자별 과세체계

구분	부채	자본
발행자	배분액을 손금으로 인정 <sup>1)</sup>	배분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투자자	이자소득 과세 <sup>2)</sup>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면세 <sup>3)</sup>

주: 1) 손금 인정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2)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3) 면세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외로부터의 배당 또는 부동산전문투자회사로부터의 배당 제외  
 자료: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IRAS e-Tax Guide: Income Tax Treatment of Hybrid Instruments," 19 May 2014, p. 1.

145) 정재호 외(2011), p. 43

## 나. 부채 · 자본의 구분

### 1) 세법 적용의 원칙

-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구분 체계는 법적 형태와 실질 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권리와 의무에 근거한 법적 식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 사실 관계 등을 통한 판단의 단계를 거침
  - 투자자는 발행자에 의해 제공된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분류 및 과세처분 내역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상품에 따른 수익을 적절히 과세소득에 포함시켜야 함
- 발행자가 혼성금융상품을 발행하기 전에 해당 금융상품의 법적 형태에 따라 부채 · 자본의 분류가 어려운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하여 IRAS의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 발행자는 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에게 해당 사전심사 내역에 대하여 적절한 채널을 통한 고지, 회람, 게시 등의 의무가 있음
  - 외국법인이 혼성금융상품을 발행한 경우에도, 사실, 제반 상황 및 발행자 국가의 분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IRAS의 검토가 필요함

### 2) 부채 · 자본의 구분 방법

- 과세관청은 사실관계 및 제반 상황에 따라 판단에 필요한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부채 · 자본 구분 시 열거된 요소에 의해서만 판단이 제한되는 것은 아님<sup>146)</sup>
  - 가득된 지분의 원천
  - 발행자의 사업에 대한 투자자의 참여권
  - 의결권
  - 상환 의무, 지급 조건
  - 투자자의 상환청구권

---

146) IRAS(2014), pp. 4~10

- 타 규제기관에 의한 분류
- 청산,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 순위
  
- 혼성금융상품이 회계기준(Singapore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이하, SFRS)에 근거하여 부채로 계상되었을지라도, 과세 목적상 법적 형태와 실질 관계에 따른 단계 별 접근 방법에 따라 판단하여 분류됨
  - 재무회계 목적상 SFRS를 준수하고 있으며, SFRS에서는 해당 상품의 실질에 따라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있음
  
- 가) 가득된 지분의 원천
  - 투자자에게 주주의 지위 혹은 잔여 지분이 부여된다면 자본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음
  
- 나) 발행자의 사업에 대한 투자자의 참여권
  - 투자자가 발행자의 사업 활동에 개입할 권리가 존재한다면 자본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음
  
- 다) 의결권
  - 주주총회에서 행사 가능한 의결권이 부여되는 경우, 자본일 가능성이 높음
  
- 라) 원금에 대한 상환 의무
  - 발행자의 사업성과에 무관하게,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확정 시점에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면, 부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음
    - 확정된 상환기일 대신 이자율 상향 조건(Step-up)<sup>147)</sup>이 존재한다면, 이는 발행자가 원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

<sup>147)</sup> 특정 시점 혹은 특정 기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자율을 증가시키는 조건을 의미함.

- 예를 들어, 혼성금융상품 발행자의 재무 상태에 따라 상환이 결정되거나, 확정만기 혹은 이자율 상향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상품은 자본으로 분류될 가능성 이 높음

마) 자급 조건

-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기간 경과 이익에 대한 분배가 확정된 의무로서, 지급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며 해당 분배가 누적적일 경우 부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음
- 만약, 분배의 지급이 비누적적이거나, 발행자의 경영성과 혹은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자본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음

바) 투자자의 상환청구권

- 원금 상환 및 배당 지급에 대한 투자자의 무조건적인 청구권은 부채의 고유한 특성으로서, 부채로 분류되는 근거가 됨

사) 타 규제기관에 의한 분류

- 싱가포르의 기타 규제기관이 규제 목적상 해당 혼성금융상품을 부채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 자본으로 분류됨을 의미함
- 예를 들어, 혼성금융상품의 발행이 발행자에게 부여된 차입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제기관이 판단한 경우, 해당 혼성금융상품은 자본으로 간주됨

아) 청산,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 순위

- 청산, 해산 시 원금 상환 순서가 일반 채권자, 후순위채 채권자보다 후순위이거나, 현재 혹은 향후 발생가능 손실에 대하여 투자자의 원금 감액, 보통주 전환 조건의 존재 시 자본일 가능성이 높음

### 3) 금융상품별 구분 사례

- 싱가포르 내국법인이 제시된 조건에 따라 영구채(Perpetual securities)를 액면 발행한 경우, 해당 혼성금융상품은 자본으로 분류됨
  - 제시된 사례의 경우, 의결권이 존재하지 않는 등의 부채의 특성도 존재하나, 원리금 상환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상환청구권의 부존재, 다른 규제기관의 자본 분류, 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의 후순위성에 따라 자본으로 간주됨

〈표 III-10〉 자본으로 분류된 혼성금융상품

구분 요소	상품 특징	분석
가득된 지분의 원천	• 영구채는 법적으로 후순위채로서, 발행 시 보통주 주의 승인이 필요치 않음	해당 특징은 부채로의 분류를 뒷받침함
의결권	• 의결권 존재하지 않음	부채의 특성임
원금 상환 의무	• 고정된 만기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자율 상향 조건(Step-up)역시 존재하지 않음 • 발행자의 선택적 상환권에 의하여 원금과 기간 경과 이익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함	해당 특징은 자본으로의 분류를 제시함
지급 조건	• 투자자에게 반기마다 고정 수의률로 지급이 연체된 이익을 수령할 권리가 부여됨 • 이익 분배는 발행자의 재량에 의함(분배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미지급 이익을 추가지급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음) • 미지급 이익은 누적되지 않음	지급은 발행자의 재량에 따르며, 미지급 이익은 누적되지 않으므로 해당 특징은 사실상 자본을 지칭함
상환청구권	• 투자자는 출자액의 상환, 이익에 대한 분배를 요구할 권리가 없음	투자자에게 출자액의 상환, 이익 배분을 강제할 수 없음에 따라 자본으로 제시함
규제당국에 의한 분류	• 발행자를 감독하는 규제당국에서는 해당 상품을 부채로 간주하지 않음	해당 특징은 자본으로의 분류를 제시함
잔여재산 분배 순위	• 청산 시, 투자자는 우선주주로 간주되어 보통주주보다 선순위이나, 현존 혹은 잠재적 채권자의 청구권에 비하면 후순위임	해당 특징은 사실상 자본을 지칭함

최종 결론

자본으로 간주

자료: 싱가포르 국세청, "IRAS e-Tax Guide: Income Tax Treatment of Hybrid Instruments," 19 May 2014, p. 13 테이블 정리

- 싱가포르 내국법인이 제시된 조건에 따라 후순위 영구채(perpetual securities)를 선택 계약 체결을 통하여 액면 발행한 경우, 해당 혼성금융상품은 부채로 분류됨
  - 제시된 사례의 경우, 약정 기간 내 미상환 시 이자율 상향(Step-up)이 존재하며, 기간경과이익에 대한 누적적 지급의무가 존재, 잔여재산 분배 시 주주보다 선순위임에 따라 부채로 간주됨

〈표 III-11〉 부채로 분류된 혼성금융상품

구분 요소	상품 특징	분석
가득된 지분의 원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법상 “주식”的 정의를 충족하지 못함</li> <li>• 상품 보유자는 주주명부가 아닌 채권자명단에 포함</li> <li>• 회사법상 자본유지규정 혹은 배당가능이익 요구 규정에 적용되지 않음</li> <li>• 발행에 어떠한 승인도 필요치 않음</li> </ul>	해당 특징은 부채로의 분류를 뒷받침하는 경향이 있음
의결권	의결권 존재하지 않음	부채의 특성임
원금 상환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정된 만기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자율 상향 조건(Step-up)이 존재함</li> </ul>	이자율 상향 조건은 상품을 유지하는 데 높은 비용을 야기함으로써, 콜옵션을 행사하여 상환할 유인을 갖도록 함. 그러므로, 해당 특징은 부채의 특징임
지급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경과이익에 대하여 지급해야 함</li> <li>• 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지급 연기가 가능하지만, 누적됨</li> </ul>	해당 특징은 부채로의 분류를 뒷받침함
잔여재산 분배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 시, 선순위 채권보다 후순위이나, 타 후순위 채무와 동 순위이며, 주주보다는 선순위임</li> </ul>	해당 특징은 부채로의 분류를 뒷받침함

최종 결론      부채로 간주

자료: 싱가포르 국세청, “IRAS e-Tax Guide: Income Tax Treatment of Hybrid Instruments,” 19 May 2014, p. 11 테이블 정리

## 7. 국제비교

### 가. 세법적용의 원칙

- 별도의 세법상 기준이 없다면 일본과 독일은 법적 형식이 우선하는 것으로 보이며, 미국, 호주, 싱가포르는 최대한 실질에 따른 과세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됨
- 미국은 실질과세 원칙과 사업목적 원칙을 명문화하여 납세자의 납세행위에 있어 정당한 사업목적이 충족되어야 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적 형식에도 불구하고 동일 명칭의 금융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그 실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리 판단을 내릴 수 있음
  - 경제적 실질에 따른 성격으로 재규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국세청에 부여하고 있음
- 호주는 과거 법적 형태가 우선되었으나, 2001년 개정 세법을 통해 거래의 실질과 원천, 의무의 경제적 실질이 더욱 중시됨
  - 호주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상법에 따른 투자관리지침에 따라 발행, 분류하고 있어 세법의 별도 기준과 달리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료됨
- 일본의 세법은 법적 예측 가능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세법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식주의에 따름
  - 국제회계기준 및 일본 GAAP에 따라 발생주의로 작성된 재무정보는 과세소득의 기초가 되므로, 세무회계와 재무회계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함
- 독일은 세법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세무목적상 독일 GAAP에 근거하여 과세하고 독일 GAAP은 상법의 형식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 독일은 세무처리의 간소화와 일관성을 달성하고자, 회계를 근거로 세무처리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을 규정함
  - 국외 기반을 둔 법인의 경우에는 독일 GAAP에 근거한 세무처리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함
- 싱가포르는 세법 적용 시 법적 형식을 우선적으로 식별 후, 실질관계를 판단하는 단계적 접근방법이 이루어지고 있음
- 권리와 의무에 근거한 법적 형식에 따른 거래 식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실질에 따른 거래파악을 통한 과세가 이루어짐

#### 나. 부채 · 자본의 구분

- 호주와 싱가포르는 세법상 부채 · 자본 구분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외의 국가들은 구분 기준 대신 보완규정을 마련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OECD는 부채 · 자본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고 보아, 보완적으로 각 국가의 세무처리가 대응될 수 있도록 권고함
- 혼성금융상품의 경우 일방의 국가에서는 금융상품을 부채로 정의하나, 타방의 국가에서는 동일 금융상품에 대한 정의를 자본으로 처리하여 세무처리의 불일치를 야기하게 됨
  - 이러한 혼성금융상품에 대하여 혼성 불일치와의 인과관계가 분명하나, 실제 다양한 종류의 금융상품이 존재하고 국가들의 세무처리가 모두 상이하므로 이를 하나의 기준으로 구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보완적으로 일방의 국가가 혼성금융상품에서 지급된 금액 대하여 소득공제(비용처리 등)를 허용하지 않거나, 타방의 국가에서 해당 혼성금융상품으로 수령한 금액을 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할 것을 권고함

- 미국은 과거 부채 · 자본의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이러한 기준이 주관적이고 상거래에 적용하기가 엄격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기준을 철회함
  - 미국은 (구)「세법」 제385조에서 주식이나 부채로서 특정 이익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세부 적용에 대해서는 재무부에 위임하고 있음
  - 재무부 시행규칙은 독립적 채권 · 채무관계를 기준으로 기업의 적정한 부채로 볼 수 있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임
    - 비례보유원칙, 과도한 부채, 금융상품의 계약변경 기준, 명시되지 않은 의무기준이 적정한 부채로서의 판단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상장되지 않은 일반기업의 상거래에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엄격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음
    - 독립적 채권 · 채무관계를 성립할 비교대상을 찾기 어려운 점, 공개되지 않은 기업은 주주대출거래가 빈번히 일어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기준을 적용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 이후 미국은 구분기준 규정을 철회하고 보완적 규정으로 이자 손금을 제한하거나, 판단을 과세관청에 위임하고 있음
  - 개별적으로 부채 · 자본의 구분이 객관적으로 불분명하다면 예규질의를 통해 과세관청의 판단에 의할 수 있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법적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여짐
- 호주는 금융상품의 발행자에게 재무적 이익을 제공해야 하는 실질적이며, 확정적인 의무가 존재하며, 제공해야 할 재무적 이익이 제공받은 이익보다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을 부채로 분류함
  - 호주의 경우, 소득세법상 부채와 자본을 구분하는 규정이 존재하여, 구분 요소의 순서도에 따라 부채와 자본을 구분함
    - 금융상품의 조건에 따라 부채와 자본의 Test를 각각 수행하여, 동시에 충족하면 부채로, 부채의 Test를 충족하지 못하면 자본으로 분류함

- 법적으로 주식의 형태가 아닌 출자지분에 대하여 비주주 지분이라는 별도 계정으로 분류하여, 투자의 대가는 지분 투자자에게 지급된 배당으로 처분됨
- 만약 법령 해석상의 문제로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조세쟁송이 발생하면 법적 요건 해석을 통한 법원의 판단을 따름
- 자본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주주의 구성원이거나, 투자의 대가가 발행자의 경제적 활동 수행 결과에 근거, 발행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 존재 등의 기본적 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주주 지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금융상품은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 거래 해당 여부, 소유권 및 투자 결정을 나타내는 형태의 요건을 충족해야 자본으로 분류 가능함
- 일본의 경우, 금융상품에 대한 부채 · 자본 구분 기준을 규정한 구체적 조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무적으로 회사법에 근거한 법원의 판단을 따르고 있음
-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비용 인정 한도에 대한 존재, 부당거래의 당사자에 대한 환급 제한, 주주인 경영자에 대한 상여 불인정 등의 보완적인 제도가 존재함
- 싱가포르는 세법상 부채 · 자본의 구분을 위한 몇 가지 기준을 마련하고, 단계적 접근을 통해 금융상품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함
- 우선적으로 법적 형태를 판단한 이후, 상품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 요소로 구분함
  - 실질적 기준으로는 투자의 원천, 투자자의 경영참여권, 의결권 존부, 상환의무, 투자자의 상환청구권, 규제 당국에 의한 분류 형태, 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 순위 등이 제시됨
- 발행자 및 투자자의 관점에서 단계적 접근을 통한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적으로 과세관청에 질의가 가능함
- 과세관청은 열거된 기준에 국한하지 않고, 금융상품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음

〈표 III-12〉 주요국의 세법상 부채·자본 구분 요약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호주	싱가포르
세법의 적용	형식이 실질에 우선하여 적용됨	실질이 우선하여 적용됨	형식이 실질에 우선하여 적용됨	형식이 실질에 우선하여 적용됨	실질이 우선하여 적용됨	실질이 우선하여 적용됨
판단 기준 여부	별도 기준 없음	별도 기준 없음	별도 기준 없음	별도 기준 없음	별도 기준 마련함	별도 기준 마련함
판단 근거	상법	법원과 과세관청의 판단	상법	독일 GAAP과 상법	별도의 기준 (본문 참조)	별도의 기준 (본문 참조)

## IV. 시사점

### 1. 개별 기준 마련 검토

- 상법의 개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 발행이 가능해진 만큼, 거래 형식만을 고려하기보다는, 거래의 실질적 성격도 고려하여 과세가 이루어져야 함
  - 자본과 부채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이 최근 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세법은 형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방식을 정하고 있음
  - 그러나 세법이 법인의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데 있어 자본거래는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자는 손금으로 산입되나 배당은 손금으로 산입되지 아니함
    - 자본의 납입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액인 익금에서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금을 차감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
  - 따라서, 그 형식이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과세표준에서 손금으로 차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임
- 부채 · 자본의 기본적인 속성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실질에 대한 포괄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의도치 않은 조세회피를 유도하거나 기업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음
  - 부채 · 자본 기준을 마련한 국가들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부채나 자본의 가장 일반적인 속성을 기준으로 규정을 마련하여 실질에 대한 근본적인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됨
    - 호주는 부채 Test에서 거래관계와 실질적이고 확정적인 의무의 존재 여부를 중요하게 검토하며,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채권자나 주주의 권리 부분에 대해 중요한 요소로 다름

- 이러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기준을 법에 명시하는 것은 납세자와 과세관청에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음
- 그러나 이는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구분을 위한 지침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이며 각 당사자의 관점에 따라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일반적 기준의 판단과 관련하여 향후 과세관청의 재량으로 처분을 번복할 여지가 있으므로 보완적으로 과세관청을 구속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고려해야 함
- 싱가포르의 경우 세법상 판단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과세관청에서 금융상품의 발행 이전에 사전 질의를 통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여 투자의 안정성을 높임
- 더불어 과세관청이 판단함에 따라 그 판단의 우선순위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기인하므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우리나라로 부채 · 자본의 특성을 토대로 세법상 별도의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나, 미국의 사례를 참고한 결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보다는 포괄적인 기준이 보다 실질에 우선한 판단을 도울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실질과 달리 상법에 따른 형식적 판단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금융상품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
- 현재 어떤 근거에 의하여 부채와 자본의 구분을 하였는지 모호한 상태에서 판단하는 것보다, 기준이 마련되면 구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그러나 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그 특성을 일관된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오히려 선의의 부채가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을 것임
  - 계약관계에서 명시되지 않은 경제적 의무에 대해서도 확정된 법적 의무가 부여 되지 않는 한 자금조달의 성격을 판단하기 어려움
  
- 또한 부채 · 자본에 대한 구분 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세법에서 규율하는 범위에 대한 검토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본 보고서는 주로 증권발행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부채 · 자본에

대한 구분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증권거래의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증권거래세의 대상이 되는 지분을 부채·자본의 구분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법인의 지분을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가 부담하는 취득세에 있어 이를 고려할 것인지 여부 등이 이에 해당됨
  -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르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는 제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모두 과세됨
  -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는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정<sup>148)</sup>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해당 채무증권이 지분증권으로 판단된다면 과점주주의 판정 등에도 고려해야 할 것인지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 즉, 증권과 관련된 다른 세제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국세기본법」 혹은 개별 세법 수준의 규율과 관련된 적용범위와 그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그러나 세법에 세부적으로 판단될 시행기준이 명시되지 아니한 채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기준만을 제시하는 것은 법 적용의 주관성이 포함될 여지가 존재하므로 기준 마련은 신중해야 함

## 2. 개별 기준 이 외의 대안 검토

### 가. 실질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처리의 준용

- 우리나라는 세법상 부채와 자본을 구분하는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세법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고 있음

---

<sup>148)</sup> 서면 1팀-250, 2005. 3. 30. 같은 뜻

- 「국세기본법」 제20조와 「법인세법」 제43조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sup>149)</sup>
- 우리나라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실질을 중시하여 부채·자본을 구분하고 있음
  -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부채·자본 구분을 위해 계약의 실질,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 인도할 의무를 회피할 무조건적 권리, 인도할 주식의 수량 혹은 금액 확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
  - 반면,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여전히 상법에 따른 형식상 판단을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부채·자본 구분을 하고 있으므로, 그 회계처리를 인정하는 것도 방법으로 제안될 수 있음
- 더불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부채·자본기준을 근거로 과세할 경우 납세자와 과세당국은 세법 해석에 소요되는 납세협력비용과 국세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독일은 세법의 적용을 간소화와 납세협력비용과 국세행정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의 처리를 그대로 준용하는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로 회계에 따른 구분을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보여짐
  - 우리나라는 별도의 기준을 통해 회계처리와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게 됨
    - 세무상 잉여금을 계산하기 위한 서식(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을))에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초잔액의 수정에 따른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그 외 세무처리와 관련된 판단에 대해서는 해당 근거를 요구함
    - 따라서, 이와 같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149)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된 근거에 대해 서식과 같은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게 될 것이며 그 기준을 판단하기 위한 비용도 소요될 수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을 모두 적용하고 있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채 · 자본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부채 · 자본의 구분에 있어서 국제회계기준을 따를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비상장회사로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부채 · 자본을 구분하기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지 아니한 기업에 한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부채 · 자본의 구분을 회계처리대로 인정할 때에도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또한, 국제회계기준이 거래의 실질을 명백하게 밝혀 구분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여전히 실질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문제는 남게 됨
  -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경제적 의무가 부담되는 이자율 상향조건(Step-up)에 대해서도 그 실질은 결국 부채라고 보고 있으나,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이를 법적인 의무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자본으로 보고 있음
  - 독일의 경우에 경제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하여 특정 상황에 있어서는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국제회계기준은 여전히 부채라고 판단하고 있음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부채 · 자본의 구분은 동일한 실질에 대하여 동일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현재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움

#### 나. 구분기준의 보완적 규정

- 객관적이고 명확한 구분기준의 마련은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을 모두 규율하기 어려울 수 있음
  - OECD의 Action plan 2에서도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의 특성을 규정하기 어렵

다고 보아 각 국가 간에 발생하는 세무처리 불일치 조정을 권고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에서도 금융상품에 대하여 부채·자본으로 구분할 특성을 규정하기 어려워 각 사안별로 처리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에도 법령에 의한 구분에 어려움이 존재하며, 세부적 규정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 규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
  
- 최근 국제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자비용을 포함한 금융비용공제의 한도를 설정하여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이 제기됨
  - OECD의 Action plan 4에서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통하여 부채와 자본의 구분에 대한 세무처리의 상이함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EBITDA 대비 일정 비율(10~30%)에 상당하는 이자비용까지만 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음
  - 독일의 경우에도 부채·자본을 예외적으로 세법의 목적에 따라 재분류를 하며, 거래 상대방이 계열사라면, 일반적인 이자비용공제를 기업의 EBITDA의 30%로 제한함
  - 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맥락에서 부채·자본비율이 과다한 기업과 비적격이자비용에 대해서는 이자비용공제를 제한하고 있음
  
- 부채와 자본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그 판단에 대해서는 사전에 과세관청에 질의하여 납세자의 법적 안전성과 투자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음
  - 부채와 자본의 구분은 투자자들이 서로 어떠한 위험을 부담하는지에 따라 나뉠 수 있는바,<sup>150)</sup> 이에 대한 기준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후 과세관청의 경정을 통해 당초 세무처리와 달라질 수 있는 위험이 있음
  - 기준이 없는 경우, 각 금융상품별로 세무처리의 검토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면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확인 절차가 납세자의 법적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됨
    - 싱가포르는 해당 금융상품의 분류가 모호한 경우에 발행하기 전에 그 구분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전답변제도를 통해 세법해석의 측면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

---

150) 이창희(2015), p. 516

하고 있으므로,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 이를 시의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면  
투자의 안전성과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이자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이나 사전적으로 세법의 해석을 과세관청에 확인하는 방법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조세회피행위를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참고문헌

- 국중호,『주요국의 조세제도 : 일본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 10.
- 김세용,「비금융기업의 신종자본증권은 IFRS에 적응한 변종인가?」,『크레딧 분석』 신영증권, 2012. 06.
- 김희준,「영구채 발행에 관한 법적 연구」,『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71호, 2015. 07.
- 선정규,「조세회피행위가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국제회계연구』 51, 2013. 10.
- 안종석,『주요국의 조세제도: 호주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05.
- 여은정 · 고윤성 · 김지홍,「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국제회계연구』 제19집, 2007. 09, pp. 175~201
- 이승환,「하이브리드증권 발행에 관한 연구」,『비교사법』 제16권 제1호 통권 제44호, 2009. 03, pp. 39~74
- 이창희,『세법강의』, 박영사, 2015. 3.
- 임정하,「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현황과 문제」,『상사법연구』 제34권 제1호, pp. 121~182
- 장정모,「바젤 III 도입 이후 조건부 자본의 현황」,『자본시장 weekly』 2017-08 호, 2014, pp. 1~3
- 정재호,『주요국의 조세제도: 싱가포르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1. 04.
- 정수용 · 김광복,「개정상법상 종류주식의 다양화」, BLF 제51호, 2012. 01, pp. 98~114
- 최규환,「세법상 부채와 자본의 분류에 대한 연구」,『조세학술논집』 제31집 제2호, 2015, pp. 149~179
- 최용선 · 최기호,『조세와 경영전략』, 아카데미프레스, 2013. 12.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주요국의 조세동향』, 2014년 1호, 2015년 1호.
- 한국금융연구원,『국제 금융 이슈』, 23권 28호, 2014. 07.
- 한국회계기준원,『금융상품 분류: 신종자본증권』, 신영사, 2015. 08.
-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재무회계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2003. 12. 04.
- 황인태 · 한봉희 · 강선민,『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한국경제연구

월 · 금융감독원, 2009. 01. 02.

ATO, "Debt and equity Tests: guide to the debt and equity Tests," 2013.

Diane Ring, "The debt-equity conundrum," *IFA Cahiers 2012*, Volume 97B, 2012, pp. 771 ~791

Donald R. Ames, "Debt-Equity Financing Guidelines: Capital Problems for Closely Held Businesses," *Fordham Urban Law Journal*, Volume 9, Issue 4, 1980, pp. 1019 ~1038

Felix B. Laughlin. "The Debt-Equity Regulations (Section 385)," William & Mary Annual Tax Conference 1982, pp. 9~31

Fischer, Hardy & Lohbeck, Allit, "The debt-equity conundrum," *IFA Cahiers 2012*, Volume 97B, 2012, pp. 307~327

HMRC, "SPENDING REVIEW AND AUTUMN STATEMENT 2015," 2015.

Ian Stanley, "The debt-equity conundrum," *IFA Cahiers 2012*, Volume 97B, 2012, pp. 69 ~89

IRAS, "e-Tax Guide: Income Tax Treatment of Hybrid Instruments," 2014.

Koji Fuhita, "Tax treatment of hybrid financial instruments in cross-border transactions," *IFA Cahiers 2000*, Volume 85a, 2000, pp. 429~444

Masao Yosimura, "The debt-equity conundrum," *IFA Cahiers 2012*, Volume 97B, 2012, pp. 391~409

OECD, "Neutralising the Effects of Hybrid Mismatch Arrangements," OECD, 2015.

Paul Abbey, "Aspect of the Debt and Equity Test," *Journal of Australian Taxation*, Volume 7, Issue 1, 2013, pp. 72~93

Tax management international forum, "Tax implications of contingent convertible securities," *Bloomberg BNA London* Vol. 33 no. 2, 2012, pp. 3~38

〈웹사이트〉

국세법령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 검색일자 2016. 1. 29.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www.dart.fss.or.kr](http://www.dart.fss.or.kr)), 검색일자 2016. 2. 11.

한국회계기준원([www.ksab.or.kr](http://www.ksab.or.kr)), 검색일자 2016. 2. 4.

한국 국세청([www.nts.go.kr](http://www.nts.go.kr)), 검색일자 2016. 2. 17.

미국 국세청([www.irs.gov](http://www.irs.gov)), 검색일자 2016. 1. 21.

호주 국세청([www.ato.gov.au](http://www.ato.gov.au)), 검색일자 2016. 2. 24.

일본 국세청([www.nta.go.jp](http://www.nta.go.jp)), 검색일자 2016. 1. 7.

싱가포르 국세청([www.iras.gov.sg](http://www.iras.gov.sg)), 검색일자 2016. 2. 17.

IBFD([www.ibfd.org](http://www.ibfd.org)), 검색일자 2016. 1. 15.

OECD([www.oecd.org](http://www.oecd.org)), 검색일자 2016. 2. 11.

세법연구 15-07  
**부채와 자본에 대한 과세체계 연구**

---

2015년 12월 23일 인쇄  
2015년 12월 30일 발행  
저자      홍성훈 · 오유나 · 조승수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http://www.kipf.re.kr)  
등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판 및  
인쇄      고려씨엔피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ISBN 978-89-8191-824-8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